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802-01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2021. 8.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국
가전제품심사과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02-01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2021. 8.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국
가전제품심사과

발 / 간 / 사

특허청은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색가전 산업 분야는 누적된 개량기술과 최신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비대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신가전 분야의 개척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 및 산업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심사 사례집은 이러한 백색가전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특허심사의 눈높이를 산업 현장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은 백색가전 분야의 개량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보성 판단 쟁점별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백색가전 분야를 심사하는 심사관 모두가 산업 현장과 동일한 눈높이와 일관된 특허성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백색가전 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김 지 수 김지수

CONTENTS _ 목 차



I

추진 배경 및 요약 1

II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5

가.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5

나. 목적/과제/작용/기능의 특이성 11

다.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25

1. 다른 기술분야 발명과의 결합 27

2. 결합의 동기와 암시 33

3. 사후적 고찰 41

4. 유기적 결합체로서 결합의 곤란성 49

라. 구성의 곤란성 53

1. 주지관용기술의 해석 55

2. 단순 설계변경의 해석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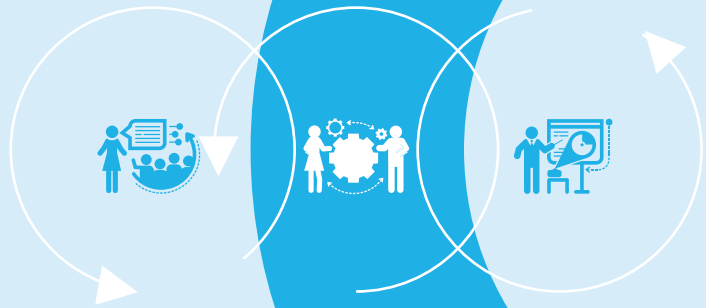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3. 통상의 창작능력 범주의 해석 78

마. 더 나은 효과의 고려 81

바.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 87

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추진 배경 및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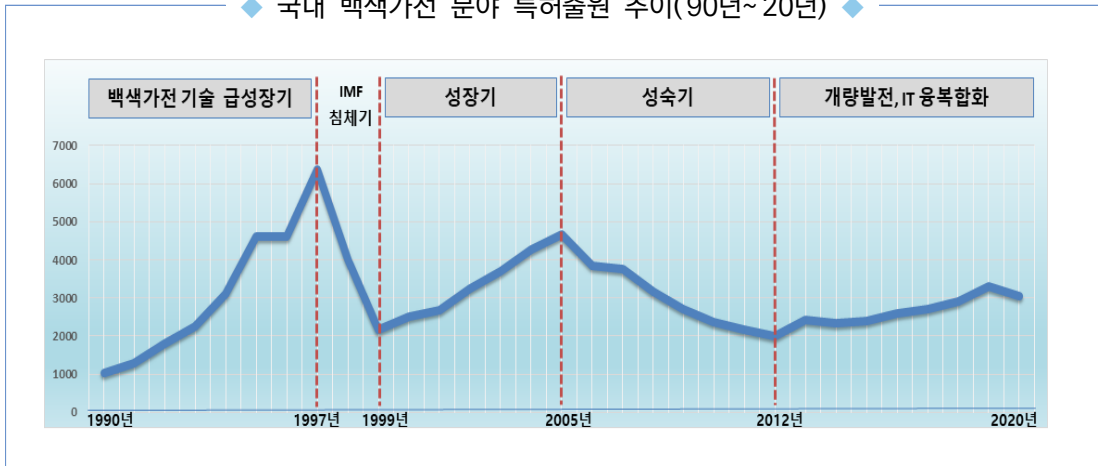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및 요약



※ (추진 배경) 백색가전은 IT 융복합화 등 혁신적인 노력으로 최근 들어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누적된 개량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며 신가전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부단한 변화 노력에 부응하여 백색가전 분야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진보성 판단 방향을 수립하고 심사관 사이에 일관된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백색가전 분야 특허출원 추이('90년~'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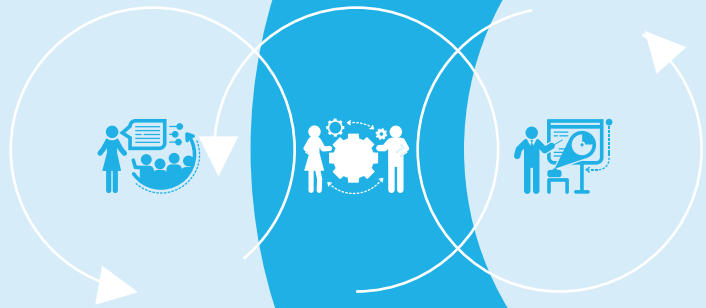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 (요약) 본 사례집은 최근 5년간 백색가전 분야의 심사 및 심·판결 사례 중 진보성 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례 40건을 선정하여,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목적·과제의 특이성, 결합의 용이성, 구성의 곤란성, 더 나은 효과의 고려 등 진보성 판단 쟁점별 심사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백색가전 분야의 진보성 판단 방향과 일관된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행기술에 비해 작용효과가 현저하지 않아도 목적의 참신성과 새로운 해결 수단 또는 방법의 제공이 인정되면 기술의 풍부화로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할 수 있음 (97후2224, 2012허8928 판결 참조)

I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가.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II.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가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심사 가이드

- 인용발명들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래기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제공한 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함 (97후2224, 2012허8928 판결)

□(事例 ①)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가진 의류관리기 (등록특허 10-1155002)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의류관리기의 당면 해결과제</p> <p>의류관리기에서 의류에 부착된 먼지 또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의 구현</p> | <p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해결방법의 제시</p> <p>① 무빙행어의 진동을 통해 의류에 부착된 미세먼지 등을 제거(L社) ② 에어젯을 분사하여 의류에 부착된 미세먼지 등을 제거(S社)</p> |
| <p style="text-align: center;">출원발명의 청구범위</p> <p>의류가 수용되는 처리실; 상기 처리실 내부로 공기나 열풍을 공급하는 공기공급장치와, 상기 처리실 내부로 증기를 공급하는 증기발생장치를 포함하는 공급장치부; 상기 처리실 내부에 배치된 행어바 및 상기 행어바를 운동시키는 구동부가 구비된 무빙행어를 포함하고, 상기 행어바는 옷걸이 고리가 수용되는 옷걸이홈을 포함하되, 상기 행어바의 폭방향으로 형성되는 상기 옷걸이홈의 형상은 상기 옷걸이홈의 양단부 폭이 중앙부 폭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류처리장치.</p> | <p style="text-align: center;">도면</p> |
| 인용발명 | |
| <p>의류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의류가 수용되는 건조실(2), 상기 건조실 내부로 온풍을 공급하는 온풍 안 내부(12a)와, 상기 온풍에 증기를 부가하는 증기 분출 파이프(16)와, 다수개의 행거를 걸수 있는 패지봉(7c)과, 상기 패지봉을 흔들어주는 요동장치(8)를 포함하여 습기를 띤 의류에 대해 여러가지 방향에서 바람을 맞힐 수 있으므로 의류의 건조가 촉진됨</p> | |
| 진보성 판단 | |
| <p>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옷걸이에 걸린 의류를 흔들며 줌으로써 의류의 신속한 건조 및 탈취의 효과를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출원발명은 행어바의 폭방향으로 형성되는 옷걸이홈의 양단부 폭이 중앙부 폭보다 더 큰 형상을 가짐으로써 행어바의 유동시에 옷걸이홈의 양단부와 옷걸리 고리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옷걸이에 걸린 의류에 전달하여 의류에 부착된 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됨</p> <p>☞ 무빙행어에 걸린 옷걸이의 흔들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결수단의 제시</p> | |

□ (事例 ②) 애드워시 드럼 세탁기 (등록특허 10-2071890)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종래기술의 문제점</p> <p>세탁행정이 시작되면 도어의 잠금상태가 유지되어 세탁과정 중 도어 개방을 위해서는 세탁행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세탁행정을 정지시킨 후 세탁수의 배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림 ⇒ 세탁중 세탁물 또는 세제의 추가공급 제한</p> |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해결수단 제시</p> <p>드럼 세탁기의 캐비닛에 구비된 도어와 별개로 세탁과정 중 자유롭게 개폐 가능한 '보조 도어'를 상기 도어에 구비 ⇒ 사용자는 세탁행정 중 보조 도어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세탁물 또는 세제 투입 가능, 세탁물의 투입 또는 세제의 공급방법을 다양화</p> |
| <p style="text-align: center;">출원발명의 청구범위</p> <p>제 1 세탁물 투입구가 마련되는 캐비닛(10); 상기 캐비닛(10) 내부에 배치되어 세탁수가 저수되는 터브(20); 상기 터브(20) 내부에 배치되어 세탁물을 수용하는 드럼(30); 상기 제 1 세탁물 투입구를 개폐하도록 마련되는 도어(70);를 포함하고, 상기 도어(70)는, 전면에 형성된 제 2 세탁물 투입구(66); 및 상기 도어(70)가 닫힌 상태에서 적어도 일부가 상기 드럼(70)의 내부를 향해 돌출되는 도어글래스(170); 상기 제 2 세탁물 투입구로 투입된 세탁물이 상기 도어 글래스(170)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기 도어글래스(170)에 마련된 글래스 개구; 상기 제 2 세탁물 투입구와 상기 글래스 개구를 연결하는 연결슈트(64);를 포함하고, 상기 연결슈트(64)는 상기 제 2 세탁물 투입구(66)로부터 상기 글래스 개구로 하향 경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p> | <p style="text-align: center;">도면</p> |
| <p style="text-align: center;">인용발명 1</p> <p>세탁물 투입을 위한 캐비닛으로 이루어진 도어를 갖는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제 1 세탁물의 투입 개구부(2)를 개폐하도록 마련되는 도어(3)의 전면에 제 2 세탁물 투입 윈도우(5)를 형성함</p> | <p style="text-align: center;">인용발명 2</p> <p>전방 세탁물 투입을 위한 원형 창 도어를 갖는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드럼의 내부를 향해 돌출되는 도어글래스의 구성을 가짐</p> |
| <p>진보성 판단</p> | |
| <p>인용발명 1, 2는 추가로 세탁물을 투입하는 구성 및 도어글래스에 마련된 글래스 개구를 구비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출원발명의 돌출된 도어 글래스에 형성되어 이를 통해 제2 세탁물을 추가로 투입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글래스 개구의 구성은 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됨</p> <p>☞ 추가 세탁물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수단의 제시</p> | |

□ (事例 ③) 애벌빨래 기능을 구비한 통돌이 세탁기 (등록특허 10-1543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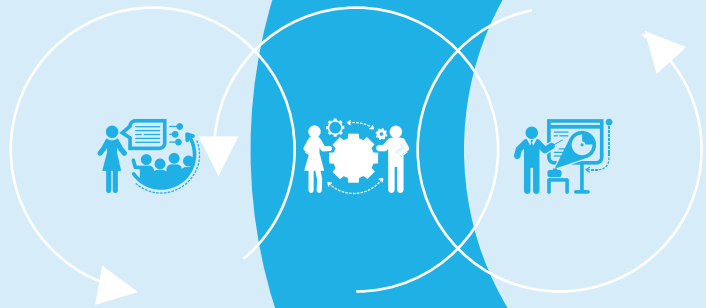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종래기술의 문제점</p> <p>종래의 통돌이 세탁기는 세탁물을 기계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세탁공간만 구비</p> <p>⇒ 애벌빨래나 소량의 손빨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세탁</p> |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해결수단 제시</p> <p>세탁물을 기계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메인 세탁 공간(본체)과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손세탁 할 수 있는 보조 세탁공간을 구비</p> <p>⇒ 본세탁과 독립적으로 보조세탁이 가능하여 애벌빨래나 소량의 손빨래 가능</p> |
| <p style="text-align: center;">출원발명의 청구범위</p> <p>세탁물을 기계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제1세탁공간이 마련되는 본체; 및 상기 본체에 안착 가능하고, 상기 본체에 안착되었을 때 상부가 개방되며 세탁물을 손세탁하기 위한 제2세탁공간이 마련되는 보조세탁유닛(120)을 포함하고, 상기 제2세탁공간은 세탁물을 손세탁하기 위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함몰되게 마련되고, 상기 보조세탁유닛(120)은 상기 제2세탁공간 내의 세탁물을 상기 제1세탁공간으로 배출시키는 세탁물 배출구를 포함하고, 상기 보조세탁유닛(120)은 상기 본체에 대해 회동 가능하게 마련되고, 상기 보조세탁유닛(120)이 회동하여 상기 본체에 대해 기울어짐으로써 상기 제2세탁공간 내의 수용물이 상기 본체의 제1세탁공간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세탁기</p> | <p style="text-align: center;">도면</p> |
| <p style="text-align: center;">인용발명 1</p> <p>세탁물을 수용하는 세탁조(13)와 세탁물이 출입 가능하도록 개구부(3)가 형성된 도어(20), 상기 도어(20)는 상기 세탁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형성된 보조투입구(27)와 상기 보조투입구를 개폐하는 보조도어(29)를 포함함으로써, 코스 진행 도중 세탁조의 회전을 멈추지 않으며 세탁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p> | <p style="text-align: center;">인용발명 2</p> <p>탈수조(1)의 윗덮개(1a) 아래의 안쪽 뚜껑(2)에 요철(3)을 곡선 상에서 일면에 설치해 한편 세로 방향에 홈(4)을 설치해 빨래판(5)을 형성함과 동시에 빨래판(5)의 하부에 오수가 유입하는 오수구멍(6)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빨래판 부착 탈수조</p> |
| <p>진보성 판단</p> | |
| <p>인용발명 1의 보조 투입구는 세탁 행정시에 도어를 열지 않고 세탁물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원발명의 보조 세탁 공간에서 손세탁된 세탁물을 메인 세탁 공간으로 배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인용발명 2의 손빨래를 위해 단순히 요철을 가지는 안쪽 뚜껑(2)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함몰된 형상을 가지는 출원발명의 보조 세탁 공간과 차이가 있으며, 인용발명 1의 보조 투입구에 인용발명 2의 빨래판을 결합할만한 동기나 암시가 없으므로,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p> <p>☞ 손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메인 세탁 공간으로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수단의 제시</p> | |

□ (事例 ④) 칼주름 기능을 구비한 의류관리기 (등록특허 10-2052976)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종래기술의 문제점</p> <p>종래의 의류관리기는 주름을 잡아주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의류에 주름을 형성하려면 세탁이나 건조가 완료된 후 다리미와 같은 주름 형성 수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 존재</p> |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해결수단 제시</p> <p>의류관리기의 도어 내주면에 의류가 지지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지지부를 구비하고 지지부에 거치된 의류를 가압하여 주름 형성 ⇒ 기존 의류관리기에 의류의 주름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비</p> |
| <p style="text-align: center;">출원발명의 청구범위</p> | <p style="text-align: center;">도면</p> |
| <p>의류가 수용되는 수용공간이 구비된 캐비닛(1); 상기 수용공간 내부로 공기 또는 수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공급하는 공급부; 상기 캐비닛(1)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어 상기 수용공간을 개폐하는 도어(11); 상기 수용공간에 구비되어 의류를 상기 수용공간 내부에 거치시키는 제1의류지지바(51); 상기 도어(11)가 제공하는 공간 중 상기 수용공간의 일면을 형성하는 도어 내주면에 구비되어 의류의 일단이 고정되는 제2의류지지바(53); 상기 도어 내주면에 구비되며, 상기 제2의류지지바(53)에 고정된 의류가 지지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지지부(91); 및 상기 도어 내주면 또는 상기 지지부(91)에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며, 상기 지지부(91)에 거치된 의류를 가압하여 의류에 주름을 형성시키는 압착부(9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류처리장치</p> | |
| <p style="text-align: center;">인용발명 1</p> | <p style="text-align: center;">인용발명 2</p> |
| <p>건조기 캐비닛(2)의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형성되어 피건조물을 다림질할 수 있게 하는 다림질유닛(90)을 구비</p> | <p>스팀 다리미 장치의 내부에는 바지와 같은 의류의 주름을 잡기 위해 베이스(172)와 누름판(178)으로 이루어지는 주름장치(170)가 설치됨</p> |
| <p>진보성 판단</p> | |
| <p>인용발명 1의 다림질 유닛 및 인용발명 2의 주름장치는 건조 챔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한 상태에서인 의류에 주름을 형성시킬 수 있고, 사용자가 다림질 유닛에 구비된 압착부재(320) 또는 주름장치에 구비된 누름판(178)을 눌러야만 바지 등의 의류에 주름을 형성시킬 수 있으나, 출원발명은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제1 의류지지바에 거치된 의류의 건조 과정과 제2 의류지지바에 거치된 의류의 주름 형성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주름 형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류를 눌러주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됨</p> <p>■ 의류 건조 과정에서 의류에 주름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수단의 제시</p> | |

I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나. 목적/과제/작용/기능의 특이성



나 목적/과제/작용/기능의 특이성

나-①

발명의 목적과 해결과제의 특이성 (특허심판원 2017원3539)

출원발명이 인용발명들과 대비해 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는지 여부

기술분야 냉장고 (냉장고, 카메라 장치, 냉장고용 도어포켓 및 냉장고용 홀더)

쟁점사항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목적)가 공통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고내를 촬상하기 위한 촬상수단, 상기 고내로 공급하기 위한 미스트를 생성하는 미스트 생성수단, 및 상기 미스트 생성수단에서 생성한 미스트를 상기 고내로 공급하기 위한 분무구를 구비하고, 상기 촬상수단은 상기 분무구와 대향하지 않는 위치에서 상기 분무구에 대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설치되는, 냉장고</p> | <p>냉장 실내에 카메라를 설치한 냉장고에 관한 것이며, 카메라 렌즈부를 따뜻하게 하는 가열수단을 구비하여 카메라 렌즈부에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임</p> <p><인용발명 1> 냉장고 내의 카메라에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임</p> <p><인용발명 2> 냉장고 저장실 공간에 무화장치를 구비하여 항균기능을 갖추는 기술에 관한 것임</p> <p><인용발명 3> 저장 공간에 수납되는 식품 및 저장 공간 내의 공기를 효과적으로 제균하고, 식품 투입, 내부 온도의 변화 및 사용실태를 기초로 선택적으로 제균을 수행하여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냉장고에 관한 것임</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은 원격지에서 용이하게 고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냉장고, 냉장고용 도어 포켓 및 냉장고용 홀더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미스트가 바람을 타고 찰상 카메라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용발명 1은 냉장고 내의 카메라에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용발명 2는 저장 실내에 무화 장치를 갖추어 항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발명 3은 저장 공간의 공기를 제균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인용발명 1 내지 3에 비하여 특이성이 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된 경우에 그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2007후5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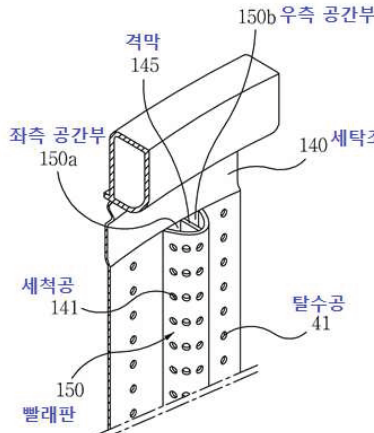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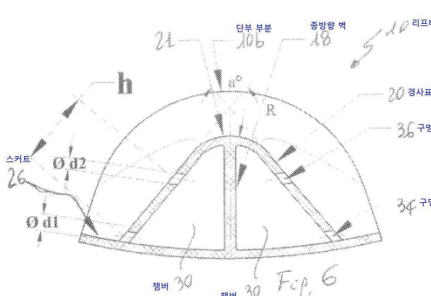
② 만약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과제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자명한 과제인지, 기술상식에 비추어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는 없는지 판단한다. <심사기준 3308>

기술분야 세탁기 (빨래판을 구비한 세탁기의 세탁조)

쟁점사항

세탁수 일부가 세척공을 통하여 각 빨래판의 공간부 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일부 세척공을 통하여 역류되어 분출되어 나오는 형태로 구성되는 기술에 관한 용이 도출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2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세탁수(洗濯水) 일부가 세척공을 통하여 각 빨래판의 공간부 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일부 세척공을 통하여 역류되어 분출되어 나오는 형태로 구성</p> | <p>리프터는 드럼(세탁조)이 저면에 위치할 때 리프터(빨래판)의 구멍(세척공)을 통해 양쪽 챔버(공간부) 모두에 세척수가 유입된 후, 드럼(세탁조)의 회전 방향에 따라 한쪽 챔버(공간부)의 세척수는 회전이 시작되면서 모두 배출되고 다른 쪽 챔버(공간부)의 세척수는 회전각도에 따라 구멍(세척공)을 통해 조금씩 배출되면서 상당한 높이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짐으로써 최적의 살수 성능을 구현</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은 역류·분출되는 세탁수에 의한 세탁물과의 마찰을 통해 세척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인용발명 2와 같은 드럼방식 세탁기에서 세탁물이 드럼의 상단부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낙차의 힘으로 세탁이 이루어지는 세탁방식의 특성상 세탁수를 특정 높이 이상 채우지 않는 관계로 세탁물에 세탁수가 잘 공급되도록 할 기술적 요구가 있고, 이를 위해 인용발명 2에서는 리프터에 중공을 형성하여 세탁수를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 세탁수의 살수 성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인용발명 2의 개시내용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구성이 가지는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 즉 '세탁수 일부가 구멍(세척공)을 통하여 각 리프터(빨래판)의 챔버(공간부) 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일부 구멍(세척공)을 통하여 역류되어 분출되어 나오는 형태로 구성'됨으로써, 그 역류·분출되는 세탁수에 의한 세탁물과의 마찰을 통해 세척력을 향상시킨다는 기술사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세척공과 격막을 구비한 빨래판 등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그와 같이 결합된 전체 구성을 통해 이 사건 출원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인 '역류·분출되는 세탁수에 의한 세탁물과의 마찰을 통한 세척력의 향상'이라는 효과는 인용발명 2에 비하여 그 현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만약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과제가 해당 기술분야에서 자명한 과제인지, 기술상식에 비추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는 없는지 판단한다. <심사기준 3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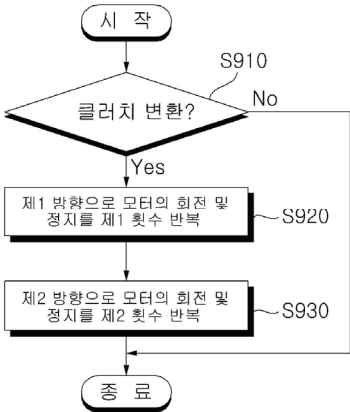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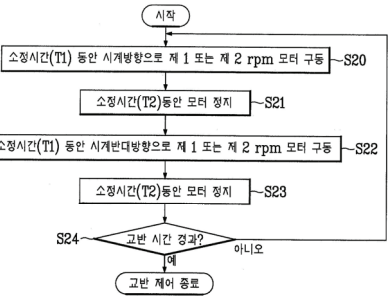
②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3309>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물 처리기기)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클러치부의 동작 변환시 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터를 '회전' 및 '정지'하는 것이 인용발명 2의 드럼 세탁기에서 포의 유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터의 '회전' 및 '정지'를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용이 도출 가능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표도면 |  | <p>인용발명 2의 도면 4</p>  |
| 기술요지 | <p>〈주요 기술 구성〉 세탁조와 펄세이터가 동일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기 위해 클러치부가 동작 변환할 때, 모터가 제 1 방향으로 '회전' 및 '정지'를 3회 반복하되, 모터 회전시 속도를 순차적으로 작아지도록 제어</p> <p>〈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효과〉 클러치부의 동작 변환시 체결력을 향상시키고, 클러치부의 소음 및 파손 가능성을 줄이며, 모터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p> | <p>〈인용발명 1〉 포랑 감지를 위하여 모터를 특정 횟수 동안 주기적으로 '회전' 및 '정지'하는 것이며, 모터의 회전시 속도는 항상 일정</p> <p>〈인용발명 2〉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제1 알피옴으로 구동하고, 이어서 제2 알피옴으로 구동한 후 소정 시간 정지하고, 이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제1 알피옴으로 구동하고, 이어서 제2 알피옴으로 구동한 후 소정 시간 정지</p> |

심결 · 판결의 요지

〈발명의 목적 비교〉

인용발명 2는 드럼 세탁기에서 포의 유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터의 '회전' 및 '정지'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클러치부의 동작 변환시 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터를 '회전' 및 '정지'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기술적 사상에 기반한 구성 및 작용 효과 비교〉

출원발명은 단순히 모터의 '회전' 및 '정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 '회전' 및 '정지'를 3회 반복하되, 제1 회전에서 제2 회전 및 제3 회전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를 순차적으로 작아지도록 제어하는 것인데, 인용발명 2는 [도면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회전하는 모터를 정지시킬 때 회전 속도가 순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 회전' → '정지' → '시계 반대방향 회전' → '정지'가 불연속적으로 점프를 하는 구성이므로, 인용발명 2에 구성 2의 모터의 회전 속도를 순차적으로 작아지게 하면서 '회전' 및 '정지'를 반복하는 기술적 사상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인용발명 2의 대응 구성으로는 출원발명의 클러치부의 동작 변환시 클러치부의 소음 및 파손 가능성을 줄이며, 모터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발명 2를 클러치부의 동작변환시 모터를 제어하는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발명 2는 모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의 클러치부의 동작 변환시 클러치부의 소음 및 파손 가능성을 줄이며, 모터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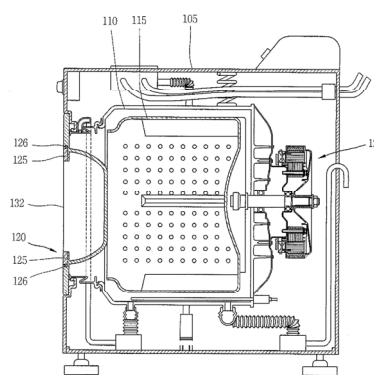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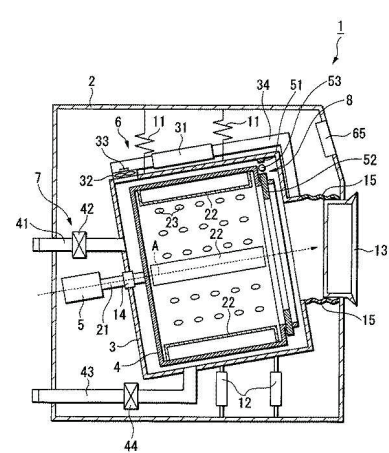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기준 3309>

기술분야 세탁기 (도광판이 구비된 드럼 세탁기)

쟁점사항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에 공통적으로 구비된 드럼 세탁기의 도어 둘레에 환형으로 결합되어 빛을 발하는 도광판의 구성이 동일한 기술적 과제 및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드럼 세탁기의 외관을 형성하고, 상기 드럼 세탁기의 전방을 향해 개구된 세탁물 투입구를 구비하는 캐비닛; 상기 캐비닛에 설치되고, 상기 세탁물 투입구를 개폐하도록 이루어지는 도어; 상기 도어의 둘레에 결합되도록 환형으로 형성되고, 상기 도어 둘레의 전면에 설치되어 상기 드럼 세탁기의 전방을 향해 빛을 가이드하도록 이루어지는 도광판(125); 및 상기 도광판의 둘레에 구비되어 서로 다른 색의 빛을 내도록 이루어지는 복수의 LED를 포함하며, 상기 도광판은 상기 드럼 세탁기의 작동 상태를 진행 코스에 따라 시각적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하도록 상기 복수의 LED에 의해 진행 코스에 따라 서로 다른 색으로 조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p> | <p>인용발명 1은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세탁물을 용이하게 꺼내기 위하여 스핀 바스켓 내부를 밝히는 도광판(52)을 포함하는 것임</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은 드럼 세탁기의 도어의 돌레에 환형으로 결합되어 빛을 발하는 도광판을 구비하는 구성이 동일하나, 출원발명은 빛을 전방을 향해 가이드 함으로써 세탁기에서 떨어진 위치에서도 세탁 과정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인용발명 1은 빛이 드럼 내부를 향하도록 배치되어 세탁물을 꺼낼 때 내부를 효과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된 경우에 그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2007후5024]
- ② 만약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과제가 해당 기술분야에서 자명한 과제인지, 기술상식에 비추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는 없는지 판단한다. <심사기준 3308>

| | |
|---|---|
| <p>을 on-off시키는 조작수단(14)을 포함하되, 상기 조작수단(14)은, 상기 레그부재(20)의 인접면에 상호 마주보도록 구비된 발광부(14b) 및 수광부(14c)와, 상기 발광부(14b)와 수광부(14c)에 연결되며 상기 배기팬(13)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유닛(14d)을 포함하는 다림질판에 있어서, 상기 레그부재(20)는 좌우 한 쌍으로 구성되어 상기 판본체(11)의 양단 하측면에 구비된 브라켓(11e)에 상호 인접방향으로 회동되어 접힐 수 있도록 결합되며, 상기 제어유닛(14d)은 상기 발광부(14b)에서 조사된 빛이 수광부(14c)로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배기팬(13)을 구동시키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림질판.</p> | <p>인용고안 3은 공중전화박스에서 실내 환풍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기팬(9)이 이용자 감지센서(18)의 발광센서와 수광센서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 기술적 사항이 나타나 있다.</p> |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의 구성 2에 해당하는 발광부, 수광부, 발광부와 수광부에 연결되며 배기팬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유닛은 인용고안 3의 발광센서, 수광센서, 배기팬 및 컨트롤부에 대응되어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 3은 그 용도가 공중전화박스의 실내 환풍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동작을 광센서로 감지하는 점에서 기능상 기술분야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 3의 동일한 광센서 감지장치를 쉽게 채택·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단순한 공지기술의 전용(轉用)에 불과하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기준 3309>
- ②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3309>
- ③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2006후2059]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장치)

쟁점사항

세탁기의 터브와 드럼의 사이를 차단하기 위한 해결 수단으로서 출원발명의 '터브와 드럼 사이를 차단하도록 터브 외부에 설치된 도어 가스켓'과 인용발명 1의 드럼의 입구부와 터브의 개구부 사이에 개재하여 간격을 폐쇄하는 이물질 투입 방지수단과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외관을 형성하며, 전방에 개구부가 형성된 캐비닛; 상기 캐비닛의 내측에 고정되어 세탁수를 수용하며, 상기 캐비닛의 개구부에 대응되는 투입구가 형성된 터브; 상기 터브의 내측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어 세탁물을 수용하며, 상기 캐비닛의 개구부에 대응하는 개구부가 형성된 드럼; 및 상기 터브와 드럼 사이를 차단하되, 상기 드럼의 처짐분을 보정하는 상기 터브 외부에 설치된 도어 가스켓을 포함하고, 상기 터브는 전면부, 측면부 또는 후면부 중 어느 하나가 상기 캐비닛의 내측에 직결되며, 상기 드럼은 상기 터브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되고, 상기 도어 가스켓은 상기 터브의 투입구를 통해 상기 터브와 드럼의 사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기 드럼의 처짐분을 보정하는 차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장치</p> | <p>인용발명은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드럼의 입구부와 터브의 개구부 사이에 형성된 간격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럼의 입구부와 터브의 개구부 사이에 이물질 투입 방지수단(140)을 개재하여 상기 간격을 폐쇄하고, 이물질 투입 방지수단은 터브(110)의 개구부(113)에 설치된 링 형태의 가이드 부재(141)와 상기 가이드 부재(141)의 외주면과 드럼(130)의 입구부(131) 사이에 개재되는 간격발생방지부재(142)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음</p> |

심결 · 판결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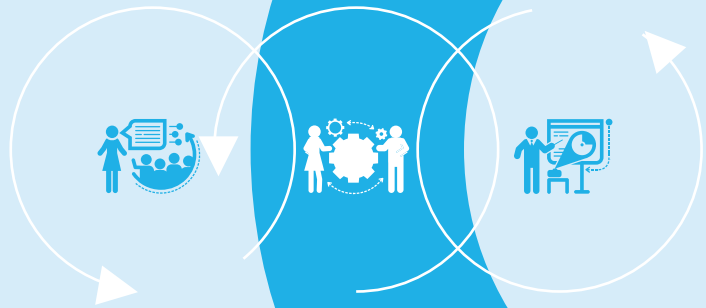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살펴보면, 양자는 터브와 드럼의 사이(간격)를 차단(폐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출원발명의 도어 가스켓과 인용발명의 이물질 투입 방지수단은 설치 위치에 차이가 있고, 출원발명은 도어 가스켓, 즉 도어와의 기밀을 유지하는 기존의 가스켓 구조를 이용하여 터브와 드럼 사이를 차단하고 도어 가스켓에 드럼의 처짐분을 보정하는 차단부를 구비하여 세탁물이 수용되어 있을 때도 터브와 드럼의 사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인용발명의 이물질 투입 방지수단은, 가이드 부재와 간격발생방지부재라는 별도 부품의 이격, 접촉에 의해 터브와 드럼 사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의 도어 가스켓과 인용발명의 이물질 투입 방지 수단은 그 형상, 구조, 작동방식 등이 전혀 달라서 양자는 터브와 드럼의 사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혀 다른 해결수단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인용발명의 가이드 부재 및 간격발생방지부재로부터 출원발명의 도어 가스켓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기준 3309>
- ② 인용발명의 특정 사항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사항이 유사하거나,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일견(一見),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에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이 가진 것과는 이질의 효과를 갖거나 동질이라도 현저한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효과가 당해 기술수준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06후619, 2000후1184]

I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다.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1. 다른 기술분야 발명과의 결합
2. 결합의 동기와 암시
3. 사후적 고찰
4. 유기적 결합체로서 결합의 곤란성



다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다-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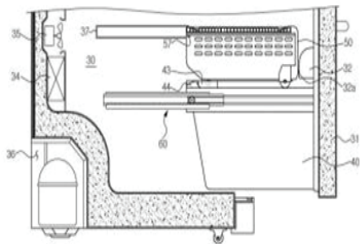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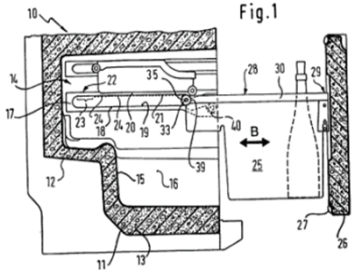
다른 기술분야 발명과 결합의 용이성 판단 (특허심판원 2018원2397)
일반 서랍장치의 인출입 관련 기술을 냉장고 서랍장치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술분야 냉장고 (냉장고)

쟁점사항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은 냉장고 저장박스(서랍)의 인출입 관련 기술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2는 단순 서랍장치에 관한 것인 경우, 인용발명 2의 기술분야가 인용발명 1 과 기술분야가 상이하어 결합이 곤란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저장실을 갖는 본체;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는 서랍형 도어; 상기 서랍형 도어의 개폐와 연동되어 이동되며, 양 측벽에 제1롤러지지부가 마련되는 제1저장박스; 및 상기 제1롤러지지부에 안착되어 구름 운동되는 전방 롤러부재와, 상기 저장실에 인입되거나 상기 저장실로부터 인출됨에 따라 상기 저장실의 내상에 마련된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하도록 양 측에 마련되는 후방 롤러부재를 갖는 제2저장박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2저장박스는 상기 제1저장박스의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제1저장박스에 대해 슬라이딩 이동할 때 상기 제1저장박스에 대한 좌우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제1저장박스의 내측면의 일 부분에 의해 지지되도록 상기 제2저장박스의 바닥면으로부터 상기 제1저장박스의 내부를 향해 하향 돌출된 이탈방지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이탈방지리브는 상기 제1저장박스의 내측면과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p> | <p>적어도 한 개 이상의 챔버와 챔버 내부의 저장박스를 구비한 냉장고에 관한 것으로, 쿨링 유닛 내부에 양 측으로 가이드 트랙(19)을 구비한 가이드 프로파일(17)이 구비되고, 저장박스(25) 상단에는 롤러(35)가 개시되어 롤러가 가이드 프로파일(17)에서 이동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수납 인출 관련기술 포함)</p> <p>〈인용발명 2〉 테이블이나 데스크 등에 설치되어 수납이 이루어지는 부착식 서랍 장치에 관한 것으로, 서랍체(3)가 보유체(2)에 수납됨에 있어서 서랍체(3)에는 가이드 철조부(12)가 구비되어 보유체(2)의 양 지지판부(6)의 내면에 접하게 됨으로써 서랍체(3)가 좌우 방향으로의 변위는 제한되고, 전후 방향으로만 가이드 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3은 냉장고 서랍장치(저장박스)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2는 데스크 등에 설치하는 부착식 서랍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3 기술들 모두 수납실의 인출입에 관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일반 수납부의 인출입 관련 기술을 냉장고 수납부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용발명 2 역시 출원발명 및 인용발명 1,3과 기술분야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인 인용발명은 원칙적으로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같은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 ②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만약,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006후3939, 2006후2059]

기술분야 냉장고 (스위치 모듈 및 이를 갖춘 냉장고)

쟁점사항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은 냉장고 디스펜서에 적용되는 스위치 모듈과 관련된 기술이고, 인용발명 2는 차량용 푸시 버튼스위치에 관한 것과 같이, 인용발명 2의 기술분야가 인용발명 1의 기술분야와 상이할 때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술요지 | <p>【청구항 1】 저장실이 마련된 본체와,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는 도어와, 상기 도어에 설치된 디스펜서와, 상기 디스펜서가 동작하도록 하는 스위치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스위치 모듈은 상기 디스펜서가 동작하도록 하는 스위치와, 외력을 전달받아 후진하며 상기 스위치를 가압하여 동작시키는 푸시 버튼과, 상기 푸시 버튼의 후면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푸시 버튼의 상부와 하부가 동시에 진퇴이동 하도록 하는 링크 조립체와, 후진한 상기 푸시 버튼의 후면을 탄성지지하는 제 1 완충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 조립체는 그 전단이 상기 푸시 버튼의 후면 상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상부 링크와, 그 전단이 상기 푸시 버튼의 후면 하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하부 링크와, 상단은 상기 상부 링크의 후단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하단은 상기 하부 링크의 후단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연동 링크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치 모듈은 상기 연동 링크의 상단과 대향되도록 설치되어 상측으로 이동한 상기 연동 링크의 상단을 탄성지지하는 제 2 완충부재를 포함하는 냉장고.</p> | <p>입력의 위치에서 눌러져도 디스펜서를 작동시키는 디스펜서 작동부를 구비한 냉장고의 디스펜서 작동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체, 도어, 스위치, 푸시부재, 복수개의 연결유닛, 푸시돌기 등으로 이루어짐</p> <p>〈인용발명 2〉 버튼부의 길이 방향 끝단 가장자리 부위에 누름 압력이 작용하더라도 버튼부가 경사지지 않고 수평으로 하향 이동하여 사용자에게 균일한 조작감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차량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용 푸시 버튼 스위치에 관한 것으로, 몸체부(40), 버튼부(10), 제1, 2회전링크(20, 20')로 구성됨.</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의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① 인용발명 1은 냉장고의 디스펜서에 적용되는 스위치 모듈로서, 푸싱부재와 그 푸싱부재를 복원시키는 탄성부재로 구성된 것이고, 인용발명 2는 차량용 푸시버튼 구성에 있어서, 버튼부의 길이 방향 끝단 가장자리 부위에 누름 압력이 작용하더라도 버튼부가 경사지지 않고 수평으로 하향 이동하여 사용자에게 균일한 조작감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차량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기술의 적용 분야가 상이하고, 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발명 1에 비해 인용발명 2는 푸싱부재의 복원위치를 일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는 기재가 없다.

② 인용발명 1, 2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인용발명 2의 푸싱부재 기본 구조를 원천적으로 다시 재설계해야 하며, 인용발명 1, 2를 결합할 수 있다는 동기나 암시의 기재가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인 인용발명은 원칙적으로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같은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②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만약,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006후3939, 2006후2059]

기술분야 세탁기 (가전제품 및 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시스템)

쟁점사항

가전제품과 서버 간의 통신 수단에 WiFi 통신망을 포함하는 기술에 관한 용이 도출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기술요지 | <구성 2> 가전제품의 아이디가 서버에 등록되고, 가전제품이 AP(access point)와의 와이파이(WiFi) 통신 연결을 통해 서버와 통신 연결 | 가전제품(7, 8, 9)에 관한 정보가 서버(3) 내의 소유가전등록부(33)에 저장되고, 가전제품(7, 8, 9)이 서버(3)와 통신 연결 |
| | <구성 3> 서버와 통신 연결되고, 사용자 정보와 가전제품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며,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하는 명령을 서버에 전송하는 외부 단말을 포함 | 서버(3)와 통신하는 가전조작용 단말(1)을 포함하고, 단말(1)에서 로그인 정보를 전송하면 (121 단계) 서버(3)가 인증한 후 가전 조작 화면을 단말(1)에 제공하며(122 단계), 단말(1)에서 가전 조작 명령을 입력하여 서버(3)에 전송함으로써(151 단계) 가전장치(7, 8, 9)를 원격 조작 |

심결 · 판결의 요지

〈구성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용발명 1, 2에 가전제품과 서버 간의 통신 수단에 WiFi 통신망을 포함하는 기재가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WiFi 통신망은 하나의 무선 공유기(AP; access point)를 이용하여 복수의 통신기기가 동시에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리 무선 LAN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널리 이용되어 온 공지기술이므로, 가전제품을 인터넷망에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WiFi 통신망을 선택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WiFi 통신망을 채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WiFi 통신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하나의 AP를 통해 복수의 전자장치를 동시에 인터넷망에 무선 연결)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다.

〈구성 3〉

인용발명 1에 ‘사용자 정보’ 및 ‘가전제품 정보’가 단말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기술특징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용발명 1의 도면 9에 개시된 실시예에서, 로그인 과정 중에(121 단계) 사용자 정보가 단말(1)에 입력되고 서버(3)로 송신된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서버(3)가 가전 조작 장치(4, 5, 6)에 로그인하거나(145 단계) 가전 조작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150 단계) 가전(장치)을 특정하는 정보가 이용되리라는 것도 이 기술분야에서는 자명한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발명 1의 실시예로부터 위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2005후1530, 2005후1851] 〈심사기준 3326〉

다-2-①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판단 (특허심판원 2018원211)
기술분야의 동일성, 기술적 과제의 공통성 및 결합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

기술분야 냉장고 (소비전력 출력장치)

쟁점사항

인용발명들로부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가전기기의 소비전력을 나타내는 소비전력정보를 취득하는 소비전력정보 취득수단, 상기 소비전력정보 취득수단이 취득한 소비전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가전기기의 소비전력을 기준값과 함께 출력하는 출력수단, 상기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 설정수단, 및 상기 기준값 설정수단이 설정한 상기 기준값을 보정하는 기준값 보정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가전기기의 소비전력을 출력하는 출력화면에 소비전력량 표시부 및 설정상태 표시부를 설치하고, 상기 가전기기의 소비전력 및 상기 기준값을 상기 소비전력량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가전기기의 설정내용을 상기 설정상태 표시부에 표시하는, 소비전력 출력장치. (가전기기의 소비전력을 기준값)과 함께 출력하여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제고)</p> | <p>냉장고 사용시 자신의 전력 사용량을 자신과 가족구성, 지역 등이 같은 다른 사람들의 냉장고 전력 사용량(기준치 등)과 비교하여 자신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임.</p> <p>〈인용발명 2〉 식품 등을 저장하는 수납고의 소비전력이나 소비전력량(적산량)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고, 외기온도 검출수단으로 검출된 외기온도에 따라 소비전력을 보정할 수 있어 소비전력의 효율 향상 도모</p> |

심결 · 판결의 요지

인용발명 1,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합의 용이성이 있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1,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① 인용발명 1은 냉장고의 사용방법 비교시스템으로 전력사용량을 표시해 다른 냉장고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인용발명 2는 식품 등을 저장하는 수납고로 수납고의 온도 뿐 아니라 전력사용량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기술분야가 같고, 전력 사용량을 표시하려는 공통의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② 냉장고에서 DC모터의 구동시 동일한 조건일 때 외부기온이 높을수록 전력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인용발명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해 기술 분야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정확한 전력소비량 비교를 위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외기온도에 따른 전력사용량 보정수단을 적용하려는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여 판단한다. [2005후3284]

②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선행기술에 그대로 교시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성질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기술상식이나 경험칙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007후1633]

다-2-②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판단 (특허심판원 2016원4527)
 인용발명들에 결합의 동기 또는 암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물 처리기기)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배수구 캡이 인용발명 3의 배수개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3 |
|-------|--|---------------------------|
| 대 표 면 | | |
| 기 술 지 | <p>배수구에 삽입 설치되고, 배수구 입구로부터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된 채 배수구의 연직방향 상부를 덮으며, 그 상면이 단차홈부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위 소정의 간격이 설정된 배수구 캡을 포함</p> | <p>배수개(排水蓋 7, 배수구 덮개)</p> |

심결 · 판결의 요지

〈심사관 의견〉

출원발명의 배수구 캡이 인용발명 3의 배수개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심결 요지〉

원결정이 지적하는 것은 '인용발명 3의 배수개(7)를 인용발명 1 또는 2의 배수구에 삽입'하면 구성 3과 구성 5의 배수구 캡과 동일한 작용효과(배수 소음을 저감)를 가지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또는 2에 인용발명 3을 결합하여 구성 3과 구성 5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용발명 3의 배수개(7)는 그 하부에 있는 다른 구성요소를 가려서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볼 수 없는' 세탁기 내부의 배수구에 삽입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인용발명 1 또는 2과 인용발명 3을 결합할 동기가 없는 바, 원결정의 위 지적을 수긍하기 어렵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기능·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기준 3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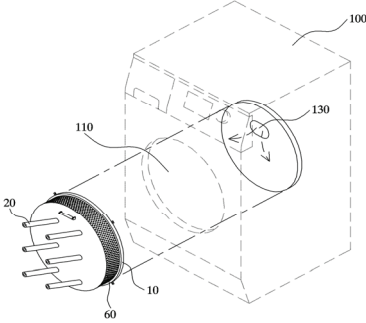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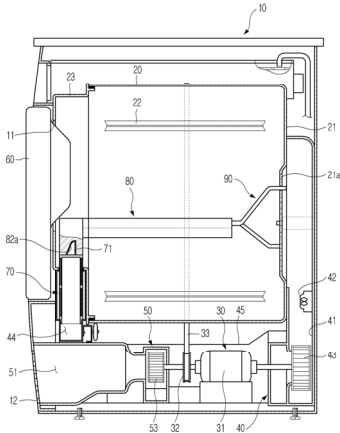
②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선행기술에 그대로 교시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성질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기술상식이나 경험칙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007후1633]

기술분야 건조기 (드럼건조기용 신발 건조장치)

쟁점사항

기술분야는 동일하나 각각 목적 및 효과가 다른 인용발명 1 내지 인용발명 4을 쉽게 결합할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건조기(100)의 내부에 회전세탁조(110)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전세탁조(110)의 뒷쪽에 송풍공급부(130)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신발걸이구가 형성되고, 상기 회전세탁조(110)의 앞쪽에 개폐문(120)이 부착되어 있는 건조기에 부착되어 있는 드럼건조기용 신발 건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드럼건조기용 신발 건조장치는 건조기(100)의 송풍공급부(130)의 앞쪽에 탈부착 형태의 건조원판통(10)이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건조원판통(10)은 송풍공급부(130)의 열풍이 관통될 수 있도록 뒷쪽에 공간부가 형성된 원통으로 형성되어 있고, 송풍공급부(130)의 열풍이 관통될 수 있도록 측면에 다수개의 송풍홀(60)이 형성되어 있으며, 송풍공급부(130)의 열풍이 관통될 수 있도록 상부면에 다수개의 송풍관통걸이구(20)가 돌출되어 있고, 송풍공급부(130)의 열풍이 송풍관통걸이구(20)</p> | <p>인용발명 1은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드럼(20), 회전드럼 내에 설치되는 선반(80), 선반의 후단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선반이 회전드럼의 후면에 지지되도록 하는 지지부재(90)를 포함한 의류 건조기에 관한 것이다. 인용발명 2는 회전드럼(2)의 흡습공기 출구측과 건조공기 입구측을 연결하는 송풍로(6)에 수분을 흡착해 발열하는 흡수 발열재(20)를 충전한 충전통(12)을 갖춘 의류건조기에 관한 것이다. 인용발명 3은 운동화를 열풍으로 건조하고, 원적외선으로 각종 세균을 살균하며, 은나노 처리된 거치구로 약취를 제거하는 운동화 건조-살균기에 관한 것이다. 인용발명 4는 최대 변경 각도의 취출 공기류를 얻을 수 있고, 취출 공기류의 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사판식 풍향 변경 장치에 관한 것이다.</p> |

| | | |
|--|--|--|
| | <p>의 내부로 관통될 수 있도록 건조원판통(10)의 공간부 측면에 고정부(42, 42') 형태로 송풍방향조절판(40, 40')이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건조원판통(10)의 고정부(30)가 피스(32)를 사용하여 송풍공급부(130)의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상기 건조원판통(10)은 상부면에 UV램프(70)가 부착되어 있고, 상기 송풍방향조절판(40, 40')은 열풍이 뒤섞일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위치차를 형성하여 열풍이 송풍방향조절판에 맞은 후에 측면으로 분산되고, 상기 측면으로 분산되고 나머지는 사이공간(38)으로 공급되도록 형성된 것이며, 상기 송풍관통걸이구(20)는 전체 또는 일부가 투명창을 형성하고, 내부에 전열등(37)이 형성되고, 중앙에 송풍팬(35)과 모터(36)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건조기용 신발 건조장치</p> | |
|--|--|--|

심결 · 판결의 요지

인용발명 1 내지 인용발명 4는 비록 기술분야는 동일하나 각각 목적 및 효과가 다르고, 각 인용발명과 출원발명의 대응 구성은 차이가 있으며, 상기 구성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고, 인용발명 1 내지 4를 쉽게 결합할만한 동기가 없어서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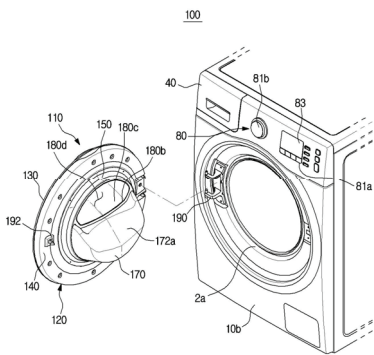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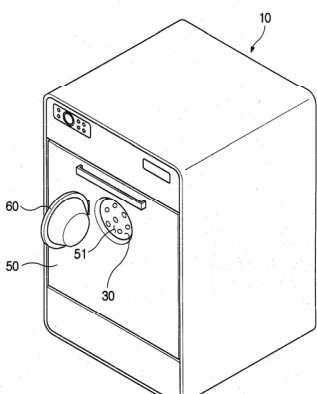
-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 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2006후2097]
- ②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여 판단한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2005후3284]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기)

쟁점사항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2의 차이 구성이 인용발명 2에 개시된 기술사상을 인용발명 1에 나타난 구성에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2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제 1 개구를 갖는 캐비닛;상기 캐비닛 내부에서 세탁수가 저수되는 터브;상기 터브 내부에서 회전가능하게 마련되는 드럼;상기 캐비닛과 상기 터브를 연결하는 다이아프램;상기 제 1 개구를 개폐하도록 상기 캐비닛에 대해 회동가능하게 마련되는 도어어셈블리;를 포함하고,상기 도어어셈블리는,상기 제 1 개구와 독립적으로 개폐되게 마련되는 제 2 개구와, 상기 제 1 개구에 대응되는 후방홀더를 갖고, 상기 캐비닛에 대해 회동가능하게 마련되는 도어본체;상기 도어본체에 마련되며 상기 캐비닛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마련되는 도어글래스;상기 후방홀더는, 상기 도어글래스와 이격되며, 상기 도어어셈블리로 상기 제 1 개구를 폐쇄시 상기 다이아프램에 접촉하여 상기 캐비닛의 내부를 실링하도록 마련되는 도어실링유닛;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p> | <p>인용발명 2는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 외관을 이루며 세탁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면 측으로 개방된 개방부가 마련된 본체와, ㉡ 본체 내부에 현가 설치되어 세탁수를 담는 고정드럼과, ㉢ 고정드럼 내에 정역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회전드럼과, ㉣ 본체의 개방부를 개폐하는 도어를 구비한 드럼세탁기로서, ㉤ 도어에는 도어를 개방하지 않고도 세탁물을 회전드럼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조개방부가 마련되며, ㉥ 보조개방부를 개폐하는 보조도어가 구비된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이다. 인용발명 1은 '세탁물을 수용하는 공간부를 포함하는 도어를 갖는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세탁기의 도어는 지지부와 원도우를 포함하고, 원도우는 실질적으로 곡면 형상이고 도어에 대하여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드럼 입구의 내부를 향하고 있고, 원도우를 통해 사용자가 드럼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기재가 나타나 있다.</p> |

심결 · 판결의 요지

인용발명 2는 드럼 세탁기 내부에 세탁수가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회전드럼 내에 세탁물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하여 보조개방부와 보조도어를 설치하는 기술사상을 제공하고 있는바, '회전드럼 내에 세탁물을 추가로 투입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드럼 세탁기의 도어 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의 드럼 세탁기에 부가되거나 구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2의 차이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2의 '드럼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추가로 회전드럼에 투입하는 보조개방부 구조'를 인용발명 1에 나타나 있는 '드럼의 내부를 향해 돌출되는 도어글래스를 가진 드럼 세탁기'에 적용함으로써 쉽게 설계할 수 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여 판단한다.
- ②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2005후3284]

기술분야 **냉장고 (전자밸브 제어장치 및 제어방법)**

쟁점사항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인식이 인용발명들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인용발명 1에서 인용발명 2의 전자밸브를 채택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및 인용발명 1,2를 결합하여 출원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표면 | | |
| 기술요지 | <p>【청구항 1】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 및 증발기로 구성되고 외부 전원이 공급되면 상기 압축기를 이용하여 작동 유체를 압축하는 냉각사이클;외부 전원이 냉장고에 공급되지 않는 정전 시에 냉동실의 냉기를 이용하여 냉장실의 온도 저하를 늦추는 열 사이편;외부전원이 냉장고에 공급되면 충전되고 외부 전원이 냉장고에 공급되지 않으면 방전되는 캐패시터;상기 냉장고에 공급된 외부 전원 또는 상기 캐패시터로부터 방전되는 전원이 입력되고, 상기 외부전원이 상기 냉장고에 공급되면 제1 방향으로 전원을 출력하고, 상기 외부전원이 상기 냉장고에 공급되지 않으면 제2 방향으로 전원을 출력하는 전원방향 전환회로; 및상기 전원방향 전환회로에서 출력되는 전원을 인가받고 상기 전원의 방향이 제1 방향이면 잠그고 제2 방향이면 개방하는 전자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밸브는 상기 열 사이편을 순환하는 냉매의 유로를 개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p> | <p>전자밸브에 관한 것으로서, 콘덴서, 스위칭 회로, 딜레이 회로를 구비하고, 전류가 차단되는 경우, 콘덴서에 축전된 전원을 이용하여 밸브의 가동철심을 역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함</p> <p>〈인용발명 2〉 냉장고에 관한 것으로서, 축냉재 및 서모 사이폰을 구비하고, 외부 온도에 따라 축냉재에 의한 냉각 시간을 조정하여, 축냉재에 의한 냉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소비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함</p> |

심결 · 판결의 요지

인용발명 1,2에는 정전시에 냉장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발명에서 해결하고자하는 과제에 대해 인식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어, 인용발명 1의 전자밸브를 인용발명 2에 채택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를 동기가 없음. 따라서, 원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통해 그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여 판단한다. [2005후3284]
- ②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선행기술에 그대로 교시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성질 그 자체에 의해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기술상식이나 경험칙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한다. [2007후1633]

기술분야 세탁기 (의류처리장치 및 그 제어방법)

쟁점사항

교반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적으로 급수를 하다가 교반기가 물에 전부 잠긴 후에는 연속적으로 급수하는 기술에 관한 용이 도출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 표 도 면 | | <p>[도 4] 삶음세탁 제어방법</p> <p>인용발명 2</p> |
| 기 술 요 지 | <p>상기 히터를 작동시켜 상기 터브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상기 교반부의 적어도 일부가 노출될 때까지 상기 급수밸브를 개방하고, 상기 히터를 작동시켜 상기 급수된 터브의 물을 가열하며, 상기 히터의 작동이 완료되면 상기 급수밸브를 단속적으로 개방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교반부가 물에 잠길 때까지 상기 급수밸브를 단속적으로 개방하고, 상기 교반부가 물에 전부 잠긴 이후에는 상기 급수밸브를 연속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류처리장치.</p> | <p><인용발명 1> 펠세이터의 날개가 잠기는 수위(C)부터 캡이 잠기는 수위(D) 사이로 급수(S3)하고 스팀단계(S4)를 수행</p> <p><인용발명 2> 잔여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남았을 때, 냉수를 간헐적으로 급수하여 세탁수온을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하여 설정온도까지 낮추는 방법</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은 교반부 일부가 물에 잠긴 상태로 히터를 통한 가열 코스가 진행된 후 급수를 하는 경우, 드럼내의 물과 급수되는 물의 온도차로 인해 교반부에 급격한 열수축이 일어나 교반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적으로 급수를 하다가 교반기가 물에 전부 잠긴 후에는 연속적으로 급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인용발명 1은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해, 내조에 수용된 세탁포의 일부가 세탁수에 젖도록 급수한 후 세탁수를 가열하여 스팀 코스를 진행하는 단계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의 급수 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고 있어 교반기 손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용발명 2는 삶음세탁 코스에서 배수온도 규격을 맞추기 위하여 냉수를 급수하는 경우, 세탁 잔여 시간을 체크한 후 냉수를 간헐적으로 급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온을 낮춰 배수온도 규격을 맞추는 것만 아니라 세탁수를 보충하여 세정력을 높이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어, 역시 교반기 손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목적이 다른 인용발명 2의 간헐적으로 냉수를 급수하는 방식을 인용발명 1에 단순 적용하여 스팀 코스 후 간헐적으로 냉수를 급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교반기 손상에 대한 문제 인식 없이 양발명을 결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하나 이상의 다른 인용발명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진보성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결합된 인용발명의 수가 많을수록 사후적 고찰 또는 합당한 거절이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3327>

②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전제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06후138, 2006후237]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기)

쟁점사항

도어의 상면에 세제수용부가 구비되고 도어의 하면에 세제수용부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투명한 재질로 형성되는 표시부가 구비 기술에 관한 용이 도출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 표 면 | | <p>인용발명 1</p> <p>인용발명 4</p> |
| 기 술 요 지 | <p>도어의 상면의 세제수용부 외에 도어의 하면에 세제수용부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투명한 재질로 형성되는 표시부가 구비</p> | <p><인용발명 1> 도어의 상면에 메인투입부와 보조투입부</p> <p><인용발명 2> 케이스(2)의 내측 또는 외측, 케이스(2)의 내측 일 경우 터브(8)의 상측 또는 하측에 액체세제 저장부(48)가 위치하여 액체세제 공급부(50)를 통해 세탁조 내부로 적정량의 액체세제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구조</p> <p><인용발명 4> 도어(20) 투명창(21)의 후면창(21b)에 일체로 형성된 세제공급장치(50)</p> |

심결 · 판결의 요지

인용발명 1, 2, 4의 대응구성들간 차이에 대해 살피건대, 출원발명은 사용자가 도어가 닫힌 상태로 세제를 투입할 수 있고 또한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저장된 세제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작용효과를 갖는데,

① 인용발명 1, 2, 4의 각 대응구성은 도어 상하면의 세제투입구와 표시부를 구비한 전체적인 결합 구조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므로 출원발명이 지닌 특유의 작용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② 인용발명 4에는 투명 후면창에 일체로 형성된 세제공급장치가 개시되어 있어 일견 세제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기능 및 작용효과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인용발명 4는 프론트 로딩 방식의 세탁기로서 인용발명 1과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다를 뿐 아니라 도어를 연 상태에서 세제를 투입하는 형태로서 도어를 열지 않고 세제를 메인트입부 등에 투입하는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4의 위 세제공급장치의 결합을 시도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며,

③ 또한 인용발명 2, 4의 대응구성은 프론트 로딩 방식으로 도어의 상면에 세제투입구를 두고 그 하면에 표시부를 배치한 기술 구성을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이므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인 고찰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의 도어에 인용발명 2, 4의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등으로는 출원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하나 이상의 다른 인용발명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진보성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결합된 인용발명의 수가 많을수록 사후적 고찰 또는 합당한 거절이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3327>

②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전제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06후138, 2006후237]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기)

쟁점사항

세탁기를 이루는 하나의 캐비닛 내부를 제1공간 및 제2공간으로 구분하는 격벽 및 공기공급유닛으로부터 공급되는 열풍이 격벽을 관통하여 제2공간으로 공급하는 구성이 인용발명 1에서 의류처리장치의 캐비닛과 보조의류처리장치의 본체가 각각의 외관을 형성하고 결합수단에 의해 서로 결합된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캐비닛; 상기 캐비닛 내부를 제1공간 및 제2공간으로 구분하는 격벽; 상기 제1공간에 구비되어 세탁수를 저장하는 터브; 상기 터브 내에 회전 가능하게 제공되며,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구성되는 드럼; 상기 격벽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어 상기 제1공간에 위치되며, 상기 격벽을 관통하여 상기 제2공간으로 열풍을 공급하는 공기공급유닛; 건조대상물을 건조하도록 상기 제2공간에 구비되며, 상기 공기공급유닛이 열풍을 공급하는 동안 상기 건조대상물을 운동시키도록 구성되는 보조건조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격벽은 상기 제1공간의 바닥을 밀폐하는 베이스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제2공간의 상부를 밀폐하는 상부커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류처리장치</p> | <p>인용발명 1은 의류처리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 의류처리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복합 의류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의류처리장치(100)의 캐비닛(110)과 보조 의류처리장치(200)의 본체(300)가 각각의 외관을 형성하고 결합수단(150)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캐비닛(110)에 설치된 공기공급유닛(500)은 캐비닛(110)과 본체(300)의 외부 영역을 경유하는 연통부재(610)를 통하여 본체(300)로 공기를 공급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음</p> |

심결 · 판결의 요지

인용발명 1은 의류처리장치(100)의 캐비닛(110)과 보조 의류처리장치(200)의 본체(300)가 각각의 외관을 형성하고 결합수단(150)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캐비닛(110)에 설치된 공기공급유닛(500)은 캐비닛(110)과 본체(300)의 외부 영역을 경유하는 연통부재(610)를 통하여 본체(300)로 공기를 공급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 세탁 기능을 수행하는 의류처리장치(100)와 건조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의류처리장치(200)를 하나의 캐비닛 내에 설치하여 공기공급유닛(500)에서 가열된 공기를 격벽을 관통하여 보조 의류처리장치(200)에 공급하는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나 시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제1항 발명에서 하나의 부재로 형성된 캐비닛 내부에 격벽을 설치함으로써 의류처리장치와 보조 의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구성에 이른다 고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특징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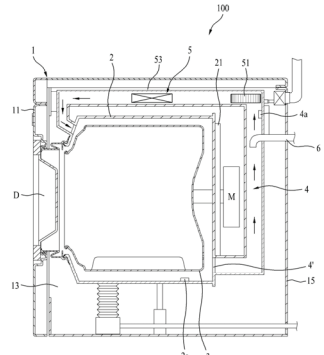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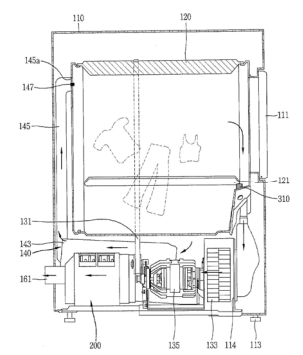
- ①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전제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② 어떤 원인의 해명에 의한 발명으로, 일단 그 원인이 해명되면 해결이 용이한 발명의 경우에는 그 원인의 해명과정을 중시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그 해결수단이 자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2006후138, 2006후237]

기술분야 건조기 (건조기 및 그 제어방법)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세탁기 드럼에서 응축덕트로 유입되는 순환공기의 함습량에 따라 응축덕트로 공급되어 순환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냉각수의 양을 달리 제어하는 구성이 인용발명 1의 열교환기의 튜브에 공급되는 물(냉각수)의 양을 조절하는 구성과 인용발명 2의 냉각수를 순환덕트로 공급하여 순환공기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표면 |  |  |
| 기술요지 | <p>【청구항 1】 냉각수를 응축덕트로 공급하여 순환 공기 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세탁물을 건조하는 건조기에 있어서, 드럼에서 응축덕트로 유입되는 공기의 함습량에 따라 상기 응축덕트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을 달리 제어하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수 밸브의 실동율을 달리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는 열풍 공급 후 기설정된 시간(t1) 동안 냉각수 밸브를 OFF하고, 상기 기설정된 시간(t1) 이후 열풍 공급이 종료될 때까지 연속되는 3개의 구간에서 상기 구간이 바뀔 때마다 상기 실동율이 바뀌도록 제어하고, 상기 열풍 공급 종료 후 냉풍을 더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p> | <p>인용발명 1은 건조물을 건조시키고 난 후 배기되는 습한 공기를 제습하는 제습유닛을 구비한 의류 건조기에 관한 것으로, 제1, 2 열교환기(220, 230) 내의 튜브(223, 233)에 공급되는 저온의 냉각수를 공급하여 순환공기 내의 수분을 제습(응축)시켜 의류를 건조하는 건조기와, 드럼(120)에서 순환덕트(114, 응축덕트에 해당)로 유입되는 공기의 건조도에 따라 제1, 2 열교환기(220, 230) 내의 튜브(223, 233)에 공급되는 물(냉각수)의 양을 조절(달리 제어)하기 위해, 물을 공급하는 가변밸브의 제1, 2밸브(242, 244)를 개폐 제어하는 제어부(370)를 포함하는 것임</p> <p>인용발명 2는 건조기능을 갖는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냉각수를 순환덕트(응축덕트에 해당)로 공급하여 순환공기 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세탁물을 건조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음</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의 세탁기 드럼에서 응축덕트로 유입되는 순환공기의 함습량에 따라 응축덕트로 공급되어 순환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냉각수의 양을 달리 제어하는 구성 중에서 냉각수를 응축덕트로 공급하여 순환 공기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2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나, 이 구성을 인용발명 1의 열교환기를 구성하는 튜브에 물(냉각수)의 양을 조절하는 구성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인용발명 1에서 제습유닛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열교환기 내의 튜브에 물을 공급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용발명 1과 2의 결합시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닌 전체 구조의 특별한 변경이 요구되는 점에서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결합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005후3277]
- ② 청구항에 기재된 결합발명이 단순히 “기술적 특징들의 병렬(나열) 또는 단순 결합(단순한 끌어모음)”에 해당되어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조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개개의 기술적 특징이 자명하다고 입증함으로써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2006후1490]

다-4-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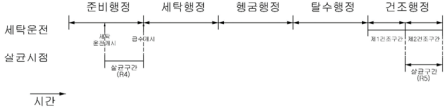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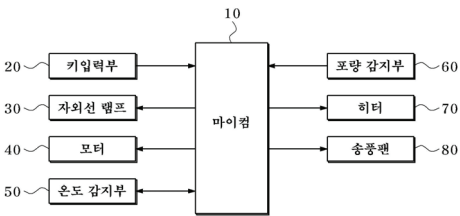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판단 (특허심판원 2015원2597)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복수의 인용발명에 개시된 구성간의 결합의 곤란성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 방법 및 세탁기)

쟁점사항

인용발명 1에 개시되지 않은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의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표면 |  |  |
| 기술요지 | <p>【청구항 1】 세탁물이 투입되는 드럼; 상기 세탁물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자외선 조사부; 및 상기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수가 상기 드럼 내부로 급수되기 전에, 상기 자외선 조사부를 작동시켜서 상기 세탁물에 자외선을 조사하고, 상기 드럼 내부로 급수된 세탁수에 의해 상기 세탁물의 세탁 또는 행균이 이루어진 후, 상기 세탁물의 건조를 위해 수행되는 건조 행정 중 적어도 일부 시간에, 상기 자외선 조사부를 더 작동시켜서 상기 세탁물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드럼 내부로 급수되기 전에 작동된 상기 자외선 조사부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 상기 세탁수를 상기 드럼 내부로 급수하는 세탁물 처리하기</p> | <p>인용발명 1은 '드럼 세탁기의 드럼 내부에 보관되는 세탁물에 대한 살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드럼 세탁기의 세탁물 살균보관방법'에 관한 것으로, '세탁, 행균, 탈수 및 건조행정을 수행하는 드럼 세탁기에 자외선을 방사하는 자외선 램프를 구비하여 드럼 내부에 있는 세탁물의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 드럼 세탁기의 살균보관 방법에 있어서, 세탁행정 전에 드럼을 교반시키고 자외선 램프를 온시켜 드럼 내부에 보관된 세탁물에 자외선을 방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의 세탁물 살균보관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p> <p>인용발명 2는 '자외선을 드럼 내부에 조사하여 살균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외선 살균 건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건조코스를 선택할 때 '살균코스'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상기 '살균코스'가 선택되면 건조행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외선 램프에서 자외선이 조사되는 것이 개시되어 있음</p> |

심결 · 판결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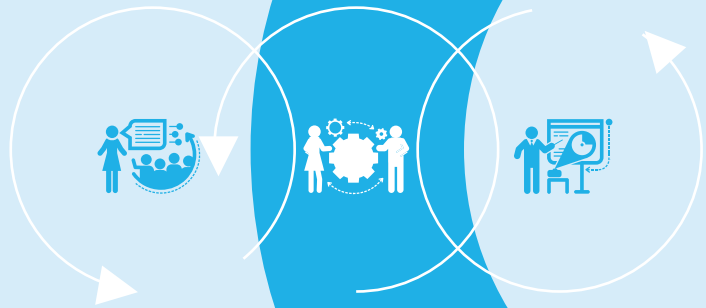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인용발명 1에 개시되지 않은 ‘건조행정 중 적어도 일부 시간에 세탁물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2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고, ‘드럼 내부로 급수되기 전에 자외선 조사부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인용발명 2에서 제어수단이 습도센서로부터 수분 함유율을 입력 받아 그 값이 설정값 이상이 되면 자외선 램프로부터 자외선이 조사되지 않도록 작동시키는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인용발명 1, 2는 모두 ‘자외선을 이용하여 세탁물을 살균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자외선을 이용하여 세탁물을 살균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기기를 제공’하는 목적도 동일하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두 개 이상의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①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선행기술의 출처가 동일하거나 인접 기술분야인지 여부, ③ 결합을 위해 서로 관련지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3327>

I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라. 구성의 곤란성



라-1-①

인용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특허법원 2018허8814)

해결과제에 대한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여부 및 주지기술과 인용발명간 결합 용이성

기술분야

냉장고 (계란 수납을 위한 서랍 트레이)

쟁점사항

출원발명을 도출하기 위해 인용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그 동기가 충분한지와 다른 기술적 곤란성을 수반하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사각틀로 이루어지며 전방으로 손잡이수단이 형성되고, 그 내측으로 계란을 수용할 수 있는 레일란좌나 개별란좌가 선택적으로 구비되어 일정한 길이의 란좌로 구비된 것에 있어서, 상기 일정길이의 란좌를 2등분하여 손잡이가 형성된 부분에는 각각의 개별란좌가 복수의 단으로 구비하고,상기 복수의 단으로 구비된 개별란좌와 연결되는 후방으로는 개별란좌와 이격되어지게 레일란좌가 구비되어지고, 상기 복수의 단으로 이루어지는 개별란좌의 후방으로 이격되게 형성되는 레일란좌는 상면은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각틀로 이루어지고, 레일란좌에만 상면은 수평을 유지하고, 하부면만이 개별란좌가 형성된 부분으로 일정각도로 하향경사지는 경사기울기를 갖게 되어 레일란좌에 놓여진 계란이 개별란좌 쪽으로 치우치게 위치되어지고, 상기 사각틀의 상면의 레일란좌 후방으로는 서랍함체의 맞물림수단과 걸림되어질 수 있도록 스토퍼가 형성되며,상기 손잡이수단으로 형성되는 내입홈은 외벽과 이격되어지는 돌출지지면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기 돌출지지면의 전방으로는 완충을</p> | <p>냉장고용 계란 수납함에 관한 것으로서 수납함의 계란 유지부가 홈 형태로 형성된 구성이 나타나 있음 ※ 출원발명과 구성차이 ① 차이1 : 개별란좌 구성 無 ② 차이2 : 서랍트레이의 스토퍼 구성 無</p> <p>《판례가 인정한 주지관용기술》 ① 개별란좌에 계란을 수납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 ② 스토퍼 및 맞물림 수단은 서랍과 같은 수납수단이 선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하는 결합 유지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임</p> |

| | | |
|--|--|--|
| | <p>위하여 굴곡부가 형성되며,상기 사각들의 측방과 후방의 외측으로는 일정간격으로 이격공간에 의한 절곡벽이 구비되고 상기 절곡벽의 외측으로는 측방으로만 만곡돌기가 일정간격으로 돌출 형성되어 서랍함체에서 출입할 경우에 마찰력을 최소로 유지되면서 탄성력을 갖도록 되며 후방의 이격공간은 완충력을 갖게 됨을 특징으로 하는 계란수납을 위한 서랍트레이.</p> | |
|--|--|--|

심결 · 판결의 요지

차이점 1,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① 다수의 계란을 길이가 긴 하나의 레일란좌에 보관하면서 구르게 할 경우 서로 충돌하여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별란좌에 계란을 수납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따라서 레일란좌만으로 구성된 인용발명 1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보관 중인 계란이 인출 과정 등에 깨지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용발명 1에 개별란좌의 결합을 시도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 결합과정은 인용발명 1에 제시된 트레이의 장공 길이를 줄이는 것 이외의 다른 구성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술적 곤란성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청구항 1의 개별란좌와 레일란좌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계란 깨짐이 방지되면서도 인출이 용이하다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스톱퍼 및 맞물림수단은 서랍과 같은 수납수단이 선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결합 유지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인용발명 1의 트레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 및 통체에 스톱퍼 및 맞물림수단의 부가를 쉽게 시도해 볼 것이고, 그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도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주지기술'이란 그 기술에 관해 상당히 다수의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과 같이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을 말하며, '관용기술'은 주지기술 중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심사기준 3324>

②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2005후1530, 2005후1851] <심사기준 3326>

기술분야 **냉장고 (냉매유로 제어방법)**

쟁점사항

출원발명 및 인용발명 1은 압축기, 응축기, 3웨이밸브, 제1, 2증발기와 제1, 2송풍기 등과 같이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 그 동일한 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설계 변경된 제어방법의 진보성 판단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표면 | | |
| 기술요지 | <p>【청구항 1】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로부터의 냉매를 응축시키는 응축기와, 상기 응축기로부터의 냉매를 제1 및 제2증발기로 공급하는 3웨이밸브와, 공급된 냉매를 증발시켜 냉장 공간과 냉동 공간을 각각 냉각하는 제1 및 제2증발기부와, 상기 제1증발기 및 제2증발기에 의한 냉기를 각각 순환시키는 제1 및 제2 송풍팬을 구비한 독립 냉각 냉장고에 있어서, 상기 냉장고는 상기 냉장 공간과 냉동 공간에 대한 동시 냉각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 냉장 공간과 냉동 공간에 대한 냉각을 교번하여 수행하면서, 상기 제1 및 제2증발기부 중의 하나의 증발기부에 제상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냉장고는 상기 나머지 증발기부에 대응하는 공간에 대한 냉각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판단에 따라 나머지 증발기부에 상기 냉매의 유로를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 냉각 냉장고.</p> | <p><냉각방식> 압축기, 응축기, 제1, 2모세관, 제1, 2증발기, 삼방밸브 및 송풍팬을 갖추고, 제1, 2증발기 주변에서 생성된 냉동실의 냉기가 유입유로로 토출되어 냉장실로 공급된 후 다시 회수유로로 유입되어 냉동실의 냉기순환유로로 다시 회수되도록 이루어짐 동시냉각이 요구되는 경우, 냉기순환유로(A) 상의 제1, 2증발기(68a, 68b)로부터 생성된 냉동공간 상의 냉기를 냉장고로 공급하고 회수하면서, 제1증발기(68a) 또는 제2증발기(68b)에 대한 제상 동작을 수행할 경우, 제1,2덤퍼(84a, 84b)를 작동시켜 제1, 2증발기로 공기의 출입을 차단 내지 개방함으로써 제상동작이 수행되지 않는 증발기로는 냉매가 반드시 유입되어 냉동실 및 냉장실이 냉각되도록 구성됨</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의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① 출원발명의 제1항은 냉장공간과 냉동공간에 각자 대응하는 증발기를 두 개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냉기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비해 인용발명 1은 냉동실의 냉기순환유로상에 두 개의 증발기가 설치되어 냉동실의 냉기를 냉장실로 공급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서 양 발명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을 이용한 냉각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② 그 차이인 냉장공간과 냉동공간의 동시 냉각이 요구되는 경우 냉장공간과 냉동공간에 대한 냉각을 번갈아 수행하는 구성이 이미 공지 내지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출원발명의 작용효과는 인용발명 1에는 기대할 수 없는 둘 중 하나의 증발기부에 제상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나머지 공간에 대한 냉각이 요구되는지 판단하여 냉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냉매의 유로가 형성되도록 하여 해당 공간을 냉각하여 수납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냉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냉매의 유로를 차단하여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유의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어, 인용발명 1의 구성요소 일부를 다르게 설계변경하거나 공지 내지 주지관용의 구성을 결합하는 등으로 출원발명의 제1항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공지된 기술 구성의 구체적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구성요소의 크기, 비율(proportion), 상대치수(relative dimension) 또는 양에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다. 다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동작이나 기능 등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적인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더 나은 효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0후2088, 2000후3623]

②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 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2006후2097]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기)

쟁점사항

연결관의 재질이 경성(rigid)인 점이 인용발명들에 명확히 개시되어 있지 않아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표면 | | |
| 기술요지 | 경성(rigid)인 연결관(132, 134) | 매니폴드 도관(44, 연결관에 해당)의 재질이 경성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에는 연결관은 경성(rigid)을 갖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인용발명 1에는 매니폴드 도관(44, 연결관에 해당)의 재질이 경성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 ① 인용발명 1의 종래기술과 발명의 목적(제3면 중간부)에서 ‘부가적 호스(supplementary hose)’의 사용을 피하려는 기술적 사항이 나타나 있는 점,
- ② 사전적 정의에서 ‘경성(rigid)’은 ‘단단한 성질, (사물·물질이) 뻣뻣한, 단단한, 잘 휘지[구 부러지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

③ 인용발명 2의 도면 2 및 3에서 매니폴드 도관(44, 연결관에 해당)은 굴곡지지 않고 직선적 형상을 갖는 점,

④당해 기술분야에서 파이프(도관)를 경성의 재질로 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용발명 1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매니폴드 도관(44, 연결관에 해당)을 경성(rigid)의 재질로 구성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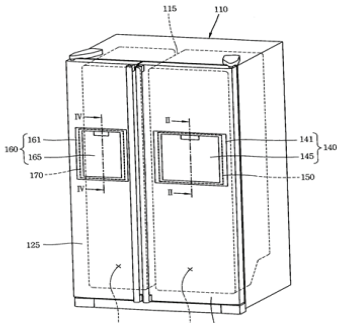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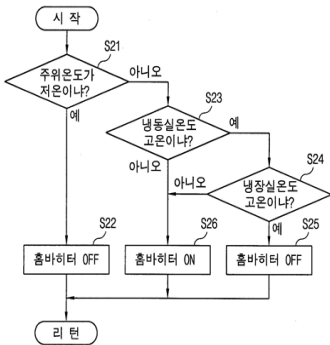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2005후1530, 2005후1851] 〈심사기준 3326〉

기술분야 **냉장고 (가변히터를 구비한 냉장고)**

쟁점사항

인용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용 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2 |
|----------------|--|--|
| <p>대 표 도 면</p> |  <p>냉장실 흡바(140), 가변히터(150)</p> |  |
| <p>기 술 요 지</p> | <p>【청구항 1】 내부에 냉각실이 형성된 냉장고 본체; 상기 냉각실을 개폐하는 도어; 및 상기 냉장고 본체 및 도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구비되고, 주변 온도에 따라 발열량이 가변되게 형성되는 가변히터를 포함하고, 상기 가변히터는, 상기 가변히터의 설치위치의 온도 상승 시 전기 저항값이 상승하여 발열량이 감소되고, 상기 가변히터의 설치위치의 온도 하강 시 전기저항값이 감소되어 발열량이 증대되는 피티씨(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PTC)소자; 및 상기 피티씨소자와 직렬로 연결되는 발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히터를 구비한 냉장고</p> | <p><인용발명 1> 아이스뱅크의 인출이 방해받는 현상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된 냉장고용 제방장치에 관한 것임</p> <p><인용발명 2> 냉장고 주변의 온도 및 냉동, 냉장실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일때 흡바히터 발열을 정지시켜 흡바부의 이슬 맺힘 및 흡바도어부 가스켓이 부착되는 부위의 변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냉장고의 흡바히터 제어방법에 관한 것임</p> |

심결 · 판결의 요지

심사관은 출원발명의 가변히터가 인용발명 2의 ‘흡바에 구비되고 온도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흡바히터’와 주지관용기술인 피티씨소자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주지관용기술인 피티씨소자를 인용발명 2의 흡바히터용으로 채용하는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용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인 피티씨소자로부터는 출원발명이 갖는 ‘피티씨소자를 냉장고 본체 및 도어 중 어느 하나에 설치함으로써 피티씨소자가 설치위치의 온도에 반응하여 발열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해주는 성질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슬맺힘 현상을 억제하면서도 전력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②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인 피티씨소자를 인용발명 2의 흡바히터용으로 채용하는 것과 출원발명이 갖는 상기 효과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출원발명의 가변히터는 피티씨소자에 직렬로 연결되는 발열부를 구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가인 피티씨소자의 설치개수를 줄일 수 있어 제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인데, 인용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구성과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동기가 암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2005후1530, 2005후1851] <심사기준 3326>

기술분야 의류 관리기 (다림질 장치)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제2 기능은 인용발명 1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구성으로서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유연한 소재로 형성되고, 내부에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입된 유입 상태일 때, 소재 표면을 통해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외부로 분출하는 제1 기능,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제2 기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바디부; 상기 바디부의 사용 또는 보관 상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태에서 형상 유지를 위한 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부; 상기 바디부에 스팀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스팀 제공부; 상기 바디부에 에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에어 제공부; 및 상기 스팀 제공부의 스팀 제공 동작 및 에어 제공부의 에어 제공 동작을 제어하되, 상기 바디부에 제공되는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p> | <p>인용발명 1의 스팀 행거는, 하면에 캐스터가 구비되는 베이스; 상기 베이스에 그 상부로 돌출되게 형성되는 중공의 송풍관; 상기 송풍관의 상부에 사람의 체형대로 형성되는 마네킹; 상기 송풍관과 마네킹 사이에 연통되도록 설치되며, 그 내부가 빈 상태로 밀폐된 함체 형태의 지지블럭; 상기 베이스에 설치되어 송풍관 내로 스팀을 공급하는 스팀발생기; 및 상기 베이스에 설치되어 송풍관 내로 외기를 송풍시키는 송풍기;를 포함하며, 상기 마네킹은, 상기 지지블럭의 상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체형에 해당하는 골격을 형성하는 중공의 골격파이프와, 상기 골격파이프의 외측면에 상기 골격파이프의 외측면에 골격파이프를 감싸도록 설치되는 섬유층을 포함하며, 상기 골격파이프에는 다수의 분사구가 천공되는 것이다.</p> |

| | | |
|--|--|--|
| | <p>의해 상기 바디부의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소정의 기준 압력 이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소정의 기준 압력은, 상기 바디부가 내부에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입된 유입 상태일 때,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하여, 프레스 다림질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압력으로서, 제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미리 설정됨-;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에어 제공부가 바디부에 에어를 공급하도록 하고, 소정 설정 패턴에 의해 상기 스팀 제공부가 스팀을 제공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바디부에 제공된 스팀 및 에어에 의해 상기 소정의 기준 압력 이상이 형성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림질 장치</p> | |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의 바디부 내부에 스팀 및 에어 중 어느 하나가 유입된 유입 상태일 때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제2 기능은 인용발명 1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나,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은 바디부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와 스팀을 프레임부를 감싸는 유연한 소재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하여 다림질을 한다는 작동원리가 동일하고,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증기발생기 및 송풍기를 이용하여 통기성을 갖는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인체 형상 주머니를 팽창시켜 그 주머니에 착용된 의류를 건조시키면서 동시에 주름을 펴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 당시의 주지관용기술을 고려하여 인용발명 1로부터 바디부의 제2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 ① 결합발명의 진보성은 2이상의 선행기술(주지관용기술 포함)을 상호결합시켜서 판단할 수 있으나, 그 결합은 당해 발명의 출원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3324>
- ②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2005후1530, 2005후1851]

기술분야 의류 관리기 (의류처리장치)

쟁점사항

출원발명 의류처리장치의 캐비닛의 상부에 구비되어 수용공간으로 스팀이 분사되는 경우에 수용 공간의 내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어 수용공간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기장치가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 표 도 면 | <p>10: 캐비닛, 20: 스팀발생기, 40:가열 공기 공급장치(히트펌프 및 히터), 43: 유입구, 41: 배기구, 20: 스팀 발생기, 11: 내부공간, 12: 도어</p> | |
| 기 술 요 | <p>【청구항 1】 의류가 수용되는 수용공간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을 개폐하는 도어를 구비하는 캐비닛; 상기 수용공간으로 선택적으로 열풍을 공급하는 열풍공급장치; 상기 수용공간으로 분사되는 스팀을 생성하는 스팀발생장치; 및 상기 캐비닛의 상부에 구비되어 상기 수용공간으로 스팀</p> | <p>인용발명 1은 의류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스팀 공기를 공급하는 스팀 발생기와 다양한 형태의 건조 공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응축식 히트펌프와 히터를 포함하되, 상기 히트펌프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류처리장치를 개시하고 있음</p> |

| | | |
|--|---|--|
| | <p>이 분사되는 경우에 상기 수용공간 내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어 수용공간과 외부로 연통시키는 배기장치; 상기 캐비닛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캐비닛 내부의 온도를 감지하는 감지센서; 및 상기 캐비닛 내부에 구비되며, 상기 감지센서에서 감지된 온도에 따라 상기 열풍공급장치 및 상기 스팀발생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배기장치는 상기 수용공간 내부의 압력이 소정압력 이상인 경우에만 개방되고, 상기 수용공간 내부의 압력이 소정압력 미만인 경우에는 개방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류처리장치</p> | |
|--|---|--|

심결 · 판결의 요지

원결정은 출원발명의 배기장치는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통상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내부 압력에 따라 상기 배기장치의 개폐를 제어하는 것은 압력 제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것으로 이용되므로 출원발명을 도출하는데 통상의 기술자에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출원발명의 배기장치는 스팀 분사 시 수용공간 내부가 소정압력 이상일 때 배기함으로써, 도어(14)가 임의 개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어 임의 개방 시스템에 의한 사용자의 화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반면, 인용발명 1은 스팀으로 인한 도어의 임의 개방 문제나 사용자 화상 발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인용발명 2에 개시된 배기구의 배기 개폐 조건은 제습모드일 때 배기구를 개방하고, 건조모드일 때 배기구를 폐쇄하는 점에서 출원발명과 목적 및 효과가 다르므로, 출원발명에 의해 도출되는 효과를 인용발명 1, 2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주지관용기술을 다른 선행기술 문헌과 결합하는 것은 통상 용이하다고 본다. 다만, 결합되는 기술적 특징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 특징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 결합은 자명하다고 할 수 없다. [2005후1530, 2005후1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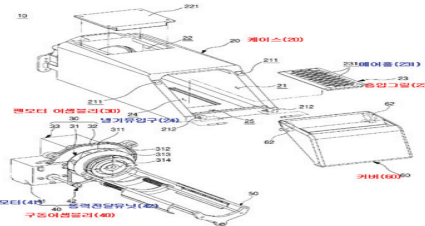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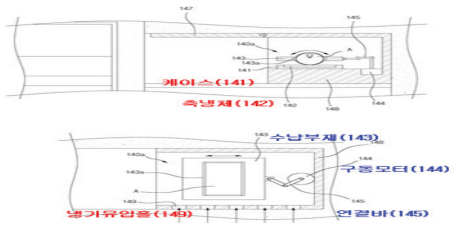
② 선행기술에 기재되어 그 구성 및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공지의 기술을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가하여 그 기능대로 사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효과만을 얻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원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공지의 기술이 적용되어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5후2991, 2004후1137, 2000후150]

기술분야 냉장고 (냉각 장치 및 냉각 장치가 구비된 냉장고)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교반부재가 인용발명의 수납부재를 단순 설계변경으로 쉽게 도출가능한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냉기 유입구가 형성되고, 전면이 개구되는 케이스; 상기 냉기 유입구에 장착되고, 다수의 에어 홀이 형성되는 흡입 그릴; 상기 케이스의 내부에 제공되고, 음료 용기가 적재되는 교반 부재; 상기 교반 부재를 구동하는 동력을 발생하는 구동 어셈블리; 상기 케이스의 전면 개구부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커버; 및 상기 케이스의 후면에 장착되어, 상기 흡입 그릴을 통하여 상기 케이스 내부로 냉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팬모터 어셈블리를 포함하고, 상기 구동 어셈블리는, 회전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 모터와, 일단이 상기 구동 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교반 부재에 연결되어, 상기 구동 모터의 회전력을 상기 교반 부재로 전달하는 동력 전달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동력 전달 유닛은, 상기 구동 모터의 회전축에 일단이 고정되고, 상기 구동 모터의 회전축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연장부와, 상기 연장부의 타단에 일단이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구동 모터의 회전축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연결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교반 부재는, 상면에 상기 음료 용기가 놓일 수 있도록, 상기 케이스의 길이 방향으로 소정 길이 연장되고, 상기 케이스의 폭 방향으로 이격되게 배치되는 다수의 홀더 샤프트와, 상기 홀더 샤프트</p> | <p>인용발명은 냉장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가진수단 또는 회전수단을 통해 축냉체와 피냉각물을 동시에 가진시키거나 교번 회전시켜 상기 축냉체의 흡열작용에 의해 피냉각물이 가속 냉각되도록 하는 방식의 급속냉각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냉각물의 냉각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p> <p><기술분야 대비> 1항 발명과 인용발명은 '냉장고의 냉각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함</p> <p><목적 대비> 1항 발명은 '구동어셈블리의 동작으로 교반부재에 안착된 음료용기에 냉기를 충돌시켜 신속하게 냉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용발명은 '가진수단 또는 회전수단통해 축냉체와 피냉각물을 동시에 가진시키거나 교번회전시켜 피냉각물을 가속 냉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양 발명의 목적은 동일</p> |

| | | |
|--|---|--|
| | <p>의 후단에 연결되고, 하단부가 상기 케이스의 바닥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리어 서포터와, 상기 홀더 샤프트의 전단에 연결되고, 하단부가 상기 케이스의 바닥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프런트 서포터를 포함하고, 상기 연결부재의 타단은 상기 다수의 홀더 샤프트 중 어느 하나의 후단부에 연결되되, 상기 리어 서포터의 하단으로부터 상측으로 이격되는 지점에 연결되어, 상기 교반 부재가 상기 리어 서포터와 프런트 서포터의 하단부를 지나는 교반축을 중심으로 상기 케이스의 좌우 방향으로 스윙 운동하며, 상기 냉기 유입구는 상기 교반 부재의 직하방에 해당하는 상기 케이스의 바닥에 형성되어, 상기 다수의 에어홀을 통과하여 상기 케이스 내부로 토출되는 냉기가 상기 교반 부재에 안착되는 상기 음료 용기의 길이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토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 장치.</p> | |
|--|---|--|

심결 · 판결의 요지

제1항 발명의 교반부재는 '음료용기를 수용하도록 케이스 폭방향으로 이격 배치되는 홀더샤프트(53), 홀더샤프트 전후방에 연결되고 케이스 바닥에 회동가능하게 연결되는 리어서포터(52)와 프론트서포터(51), 리어서포터와 프론트서포터의 하단부를 지나는 교반축을 중심으로 케이스가 좌우방향으로 스윙운동하는 것'으로, 인용발명의 '피냉각물을 수납하는 수납부재(143)'에 대응된다. 이에 대하여 원결정은 인용발명의 수납부재(143)로부터 세부구성을 변경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교반부재에는 교반축을 형성하여 케이스를 좌우방향으로 스윙(swing)운동시켜 교반함으로써 냉각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인 반면, 인용발명의 수납부재는 피냉각물을 축냉체(142)에 롤링 및 가진운동으로 접촉시켜 열전달하는 것으로서 운동 형태가 서로 다르다. 게다가, 교반부재의 홀더샤프트(53)는 음료용기를 낚힌 채로 안착되도록 길이방향으로 연장되고, 바(bar) 형태로 형성되어 흡입그릴의 에어홀과 간섭되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여, 분사되는 모든 냉기가 음료용기에 직접 접촉되도록 하는 냉각방식인 반면, 인용발명의 수납부재는 피냉각물(A)을 세워서 안착하고, 피냉각물을 둘러싸는 통형태로 형성되어 물과 소금물의 혼합액으로 형성된 축냉액과 피냉각물 사이의 대류현상으로 피냉각물의 내부열을 축냉액에 전달하는 흡열작용으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운동형태, 냉각구조 및 세부구성의 차이가 있는 인용발명의 수납부재를 제1항 발명의 교반부재의 세부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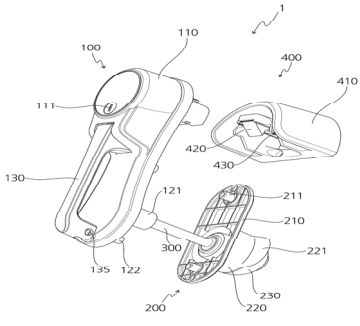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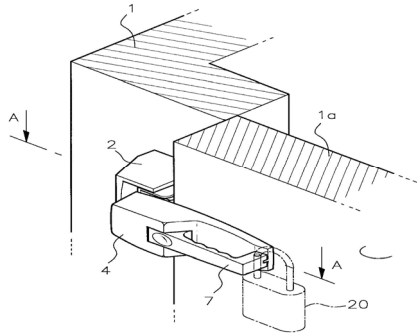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공지된 기술 구성의 구체적 적용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단순히 구성요소의 크기, 비율(proportion), 상대치수(relative dimension) 또는 양에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다. 다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동작이나 기능 등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적인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더 나은 효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0후2088, 2000후3623]

기술분야 냉장고 (냉장고 및 냉동고용 도어록 장치)

쟁점사항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의 냉장고용 도어락 장치에 있어서, 출원발명이 갖는 상이한 작동링크 구성에 관한 진보성 인정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수용공간이 형성된 하우징; 일측에 걸림바가 형성되고 타측에 상기 하우징과 결합되는 힌지축이 삽입되어 상기 힌지축을 중심으로 스윙하는 지지바; 상기 지지바에 연결되어 상기 지지바를 스윙동작 시키는 외부 핸들; 상기 하우징과 결합하여 상기 지지바와 상기 외부 핸들의 적어도 일부를 수용하는 상기 수용공간을 밀폐하는 지지프레임; 상기 지지프레임을 따라 수평 이동하며 상기 지지바와 연결되어 상기 지지바를 스윙동작 시키는 가동플레이트; 상기 가동플레이트를 향하여 수직방향으로 운동하는 푸쉬로드; 및 상기 푸쉬로드의 단부를 가압하여 상기 푸쉬로드를 상기 가동플레이트를 향해 이동시키는 누름부를 포함하는 내측스위치부를 포함하되, 상기 푸쉬로드와 상기 가동플레이트는 서로 빗면접촉 하여, 상기 푸쉬로드가 상기 가동플레이트를 향하여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면 상기 가동플레이트는 상기 지지프레임을 따라 수평 이동하여 상기 지지바를 스윙운동 시키는 냉장고 및 냉동고용 도어록 장치.</p> | <p>로크박스, 로크박스(4)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과 더불어 탄성부재(5)에 의하여 탄성 지지되는 핑거(6)를 구비하고 외부핸들(7)의 단부가 제1핀(8)에 의해 연결링크(9)와 연결되고, 상기 연결링크(9)가 상기 핑거(6)의 중앙부에 힌지결합되고 핑거와 연결되어 수평이동하는 작동링크(13)를 구비하고, 내부핸들이 핸들축과 연결되고 상기 핸들축과 캠이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연결되고, 상기 캠에 의하여 직선운동하는 작동링크의 한쪽 단부가 제2핀에 의해 상기 연결링크의 단부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짐</p> <p><인용발명 3> 사용자가 푸쉬패널(170)을 밀면 푸쉬패널에 연결된 푸쉬바가 슬라이드바를 향해 수직이동하고, 푸쉬바와 빗면접촉하는 슬라이드는 수평이동하는 구성을 가짐</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의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용발명 1, 3 또는 1, 2, 3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① 인용발명 1, 2에는 출원발명의 냉장고용 도어록 장치에 해당되는 구성들이 각각 대응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만, 출원발명의 빗면 접촉하는 구성 등으로 누름작동을 가동플레이트의 수평이동으로 변환하는 구성에 대한 인용발명 1의 대응구성은 캠 등으로 회전운동을 작동링크의 수평이동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② 그러나, 그 일부 차이는 인용발명 3에 사용자가 푸쉬패널(170)을 밀면 푸쉬패널에 연결된 푸쉬바가 슬라이드바를 향해 수직이동하고, 푸쉬바와 빗면접촉하는 슬라이드는 수평이동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 1과 3은 모두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도어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각 발명의 작동링크는 작동링크를 수평이동(슬라이딩)시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인용발명 1의 캠 등의 구성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술수단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구성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1에 비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특이성이 없고 그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구성도 인용발명 1, 3 또는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인용발명 1, 3 또는 1 내지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007후1299, 2005후438]

② 선행기술에 기재되어 그 구성 및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공지의 기술을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가하여 그 기능대로 사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효과만을 얻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원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공지의 기술이 적용되어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5후2991, 2004후1137, 2000후150]

기술분야 건조기 (공기단열터브를 갖는 세탁 건조기)

쟁점사항

유입구와 유출구에 송풍팬과 흡입팬이 설치되고 유입구와 유출구는 공기순환유로의 원주방향을 따라 서로 180도 간격을 두고 이격 배치되는 구성에 관한 용이 도출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p>대 표 도 면</p> | | |
| <p>기 술 요 지</p> | <p>구성① : 외부 공기의 유입, 유출구에 유출입 개폐밸브, 송풍팬·흡입팬과 위 유입·유출구의 개폐와 팬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유닛을 더 포함하고 있는 점</p> <p>구성② : 유입구와 유출구를 공기순환유로의 원주방향을 따라 180도 간격을 두고 이격 배치시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분기된 후 다시 합류되어 유출되는 것으로 더욱 한정하고 있는 점</p> | <p>외부 공기를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와 배출구 외에 외부 공기 유입의 개폐를 담당하는 냉각수밸브(112'), 냉각수 배수호스(116') 등이 구비된 냉각유체공급수단(110')</p> <p>건조 겸용 세탁기 역시 터브의 둘레부를 따라 형성된 이중벽부 사이에 외부 공기가 통과하는 냉각유로를 형성</p> |

심결 · 판결의 요지

〈구성①〉 열교환 장치 등의 기술분야에서 외부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히 하고 유출 입을 개폐 단속하기 위해 각종 팬이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제어부를 통해 제어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인용발명 2, 3에도 유출입을 위한 구조가 개시되어 있는바, 외부 공기가 유출입되는 부위에 개폐 제어나 송풍 압력 등을 감안하여 각종 밸브와 팬을 설치하여 제어하는 기술 구성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내지 3에 개시된 대응구성과 주지관용의 기술적 사항을 참조하여 단순한 설계상의 변형 과정을 거쳐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구성②〉 유입구와 유출구가 180도 간격을 두고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인용발명 1에 이미 내포된 기술 사상의 연장선 상에서 쉽게 상정되는 유출입구의 상호 배치 형태로서 인용발명 1을 대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유출입구의 배치 위치(각도)를 한정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작용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서 달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한정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특유의 작용효과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인용발명들을 대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도출해 낼 수 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한채 단순히 적용상의 구체적 환경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4후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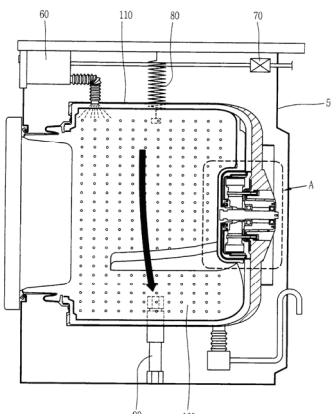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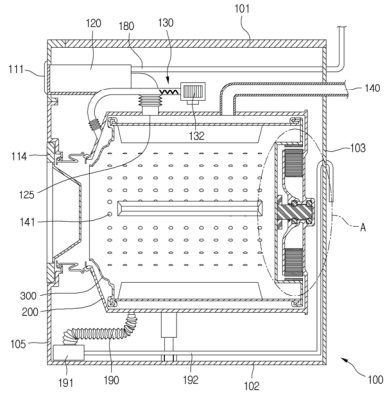
②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공지된 기술 구성의 구체적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구성요소의 크기, 비율(proportion), 상대치수(relative dimension) 또는 양에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다. 다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동작이나 기능 등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적인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더 나은 효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0후2088, 2000후3623]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기)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세탁기 터브 내부에 드럼을 회전시키는 구동모터를 배치하는 세부적인 구성이 인용발명 1의 세탁기 터브 내부에 구동모터를 배치하는 구성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통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5】 외관을 형성하는 본체; 상기 본체 내부에 설치되어 세탁수를 저장하는 터브; 상기 터브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드럼; 상기 드럼에 결합되어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 상기 터브와 상기 드럼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구동 모터; 상기 드럼의 배면에 설치되어 상기 회전축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 받고, 중앙에 상기 회전축이 체결되는 돌출부를 구비한 원형판과 상기 원형판의 외주에서 수직으로 연장된 외주면을 가지며, 상기 외주면에 상기 드럼의 배면에 체결되는 복수 개의 드럼체결부를 구비하는 스파이더; 및 상기 스파이더의 상기 원형판과 상기 외주면으로 이루어진 수용공간에 수용되고, 상기 스파이더의 상기 돌출부가 삽입되는 관통홀이 형성된 중앙</p> | <p>인용발명 1은 '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드럼에 영구 자석이 설치되고 고정자가 터브에 설치됨으로써 드럼 및 터브에 대한 회전자 및 고정자의 설치구조가 개선된 세탁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p> |

| | | |
|--|---|--|
| | <p>벽부와 상기 중앙벽부의 외주에서 수직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측벽부를 구비하며, 상기 중앙벽부와 상기 측벽부로 이루어진 내부공간에 상기 구동 모터를 수용하도록 형성되는 개스킷을 포함하며, 세탁수가 상기 구동 모터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 개스킷 중앙벽부의 관통홀과 상기 스파이더의 돌출부 사이에는 실링부재가 구비되며, 상기 개스킷의 측벽부 끝단쪽에는 주름이 형성되고 상기 개스킷의 측벽부 끝단이 상기 터브에 닿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p> | |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은 세탁기 터브 내부에 드럼을 회전시키는 구동모터를 배치함으로써 드럼 내부의 공간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동일하나, 드럼과 구동모터를 연결하는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출원발명에서 드럼과 구동모터의 회전축을 연결하는 스파이더는 관용적인 기술사항이고, 스파이더를 인용발명 1에 적용시 드럼에 부합하는 형상으로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것이며, 전자석을 사용하는 구동모터를 선택하는 경우 구동모터 전체를 밀폐하는 구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다양하게 설계 변경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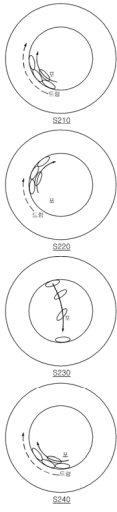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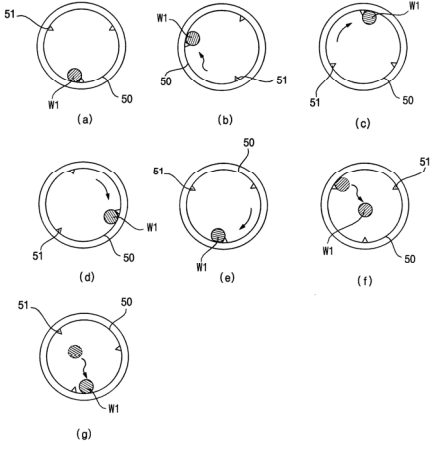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한 채 단순히 적용상의 구체적 환경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4후1137]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 방법 및 세탁기)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차이 구성이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청구항 1】 세탁코스를 선택하는 코스 선택 단계; 드럼에 수용된 포에 대한 포량을 감지하는 포량 감지 단계; 상기 감지된 포량이 설정 범위 내인 경우, 구동부는 상기 드럼을 회전시켜서 상기 포가 상기 드럼에 붙어 회전하여 상기 드럼 높이의 절반을 넘은 후, 상기 구동부는 상기 포가 상기 드럼을 제동하여 상기 포가 상기 드럼의 정점에서 낙하되도록 하며, 일정 시간 동안 상기 드럼의 회전 및 감속을 반복하는 낙차 모션 단계; 상기 낙차 모션 단계 후, 상기 구동부는 상기 드럼을 회전시켜서 상기 포가 상기 드럼 높이의 절반 부근에서 낙하하도록 구동되고, 상기 구동부는 상기 구동부의 부하를 낮추기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구동을 정지시키며, 일정 시간 동안 구동부의 구동 및 정지를 반복하</p> | <p>인용발명 1은 세탁코스 선택 단계[표준코스], 포량 감지 단계[세탁물의 부하량을 판정], 포가 드럼에 붙어 회전하도록 60 rpm의 회전속도로 회전 및 감속하는 단계[세탁물이 드럼(13)의 내벽면에 가볍게 달라붙도록 소정의 제 3 회전속도(예컨대, 60 rpm)로 소정의 ON-OFF 시간(예컨대, 10 초 ON - 3 초 OFF)으로 소정시간(예컨대, 30 초간) 동안 회전시킴], 포가 드럼 높이의 절반 부근에서 낙하하도록 45 rpm의 회전속도로 일정 시간 동안 드럼의 구동 및 정지를 반복하는 냉차 모션 단계[세탁물이 상부에 들어올려져서 텀블링하도록, 소정의 제 1 회전속도(예컨대, 45 rpm)로 소정의 ON-OFF 시간(예컨대, 10 초 ON - 3 초 OFF)으로 소정시간(예컨대, 3 분간) 동안 회전시킴]을 포함하고, 60 rpm의 회전속도로 회전 및 감속하는 단계[제 3 회전속도로 회</p> |

| | |
|--|---|
| <p>는 냉각 모션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낙차 모션 단계 및 상기 냉각 모션 단계는 n회 반복되며, 반복되는 횟수 n은 선택된 코스 또는 감지된 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 방법</p> | <p>전시킴] 및 상기 냉각 모션 단계[제 1 회전속도로 회전시킴]가 반복되는 세탁 방법</p> |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발명은 드럼이 1 회전하는 동안 포가 드럼의 최저점에서 165도를 넘으면 구동부가 드럼을 제동하여 포가 드럼의 정점에서 낙하됨으로써 충격량을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인 점에 반해, 인용발명 1은 약 60 rpm의 속도로 소정 시간(10초) 동안 구동하여 세제액이 세탁물에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세정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약 60 rpm의 고속으로 회전하는 동안 드럼에 달라붙은 포가 드럼의 정점에서 낙하하도록 드럼을 제동하는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나 시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출원발명은 포가 낙차를 이용한 높은 충격력에 의하여 세탁되는 효과가 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공지된 기술 구성의 구체적 적용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단순히 구성요소의 크기, 비율(proportion), 상대치수(relative dimension) 또는 양에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다. 다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동작이나 기능 등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적인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더 나은 효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0후2088, 2000후3623]

라-3-①

발명에서 구성의 곤란성 판단 (특허심판원 2018원2876)
 통상의 창작능력 범주의 해석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기)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엠보싱의 깊이와 패널 두께 비율의 범위가 통상의 창작 능력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1 |
|---------|---|---|
| 대 표 도 면 | | |
| 기 술 요 지 | <p>한 쌍으로 마련되는 제 1 비드(110) 및 제 2 비드(120)는 프레임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복수개로 마련되며 제 1비드, 제 2비드 및 연결부는 프레임 두께의 8배 내지 10배의 깊이를 갖도록 마련</p> | <p>복수개의 엠보싱(9) 깊이가 패널(15) 두께의 약 2배 내지 6배인 것</p> |

심결 · 판결의 요지

〈출원인 의견〉

인용발명 1에 기재된 엠보싱의 깊이와 패널 두께 비율의 범위는 출원발명에 기재된 제 1, 2 비드 및 연결부의 깊이와 프레임 두께의 비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심결 요지〉

인용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인용발명 2의 명세서 및 도면에 비드의 깊이(N)가 7 mm이고, 사이드 패널의 두께는 0.5 mm ~ 1 mm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있음을 볼 때, 비드의 깊이(N)를 사이드 패널의 두께 배수로 환산하면 비드의 깊이(N)는 사이드 패널 두께의 7배 내지 14배인 것을 알 수 있어 구제1, 2 비드 및 연결부의 깊이와 프레임 두께의 비율 범위(8배 내지 10배)가 인용발명 2의 비드 깊이(N)와 사이드 패널 두께의 비율 범위(7배 내지 14배)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제1, 2 비드 및 연결부의 깊이와 프레임 두께의 비율 범위가 인용발명 1, 2에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출원발명의 비드 및 연결부의 깊이와 프레임 두께의 비율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드 및 연결부의 깊이와 프레임 두께를 달리 하여 시험을 반복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비드 및 연결부의 깊이와 프레임 두께의 비율 범위를 수치 한정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생긴다고 인정할만한 데이터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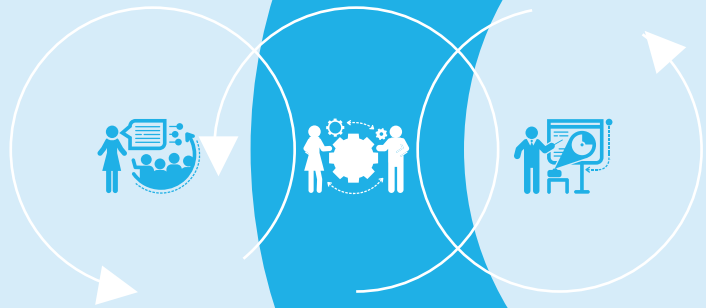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시사점 · 판단 가이드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007후1299, 2005후438] 〈심사기준 3310〉

I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마. 더 나은 효과의 고려



마 더 나은 효과의 고려

마-① 더 나은 효과의 고려 (특허심판원 2018원2025)

기술분야 세탁기 (세탁장치)

쟁점사항

출원발명이 지닌 2개의 경사부 구조에 관한 효과에 대한 검토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2 |
|------|--|---|
| 대표도면 | | |
| 기술요지 | <p>캐비닛의 전면은 상기 터브의 전면과 대응되는 경사를 구비하며 상기 개구부가 구비되는 제1 경사부와, 상기 제1 경사부의 하단에서 상기 터브의 하부면과 대응하여 후방으로 하향 경사지게 구비되는 제2경사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경사부와 상기 제2경사부가 만나는 지점은 상기 터브의 하부가 전방으로 돌출된 것에 대응하여 상기 캐비닛의 바닥면보다 전방으로 돌출되어 구비되는 것</p> | <p>회전드럼(5)이 회전축 방향을 수평방향으로부터 각도(θ)=30 ± 5로 경사지게 배치된다(식별부호 30).</p> |

심결 · 판결의 요지

터브 하부 영역의 케이스를 수직면에서 하향 경사지게 변경하더라도 세탁기의 기능이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경사각이 형성되는 캐비닛의 내부는 세탁기의 부품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이므로 제2경사각을 형성하여 캐비닛 하부공간을 없앤다고 하여 세탁기의 전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무게중심에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2경사각을 형성하여 캐비닛의 바닥면 면적이 좁은 것이 경사각 없이 캐비닛의 바닥면 면적을 넓게 한 인용발명 1보다 세탁기를 안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

캐비닛의 하부 면적을 그 아래 설치되는 종래 의류처리장치나 지지수단의 상부 면적과 같게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기는 좋을 수 있으나, 세탁기의 기능 자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캐비닛 하부 면적을 종래 의류처리장치의 상부 면적과 같게 하는 것은 캐비닛을 종래 의류처리장치의 상부에 설치 할 때 양 구성 간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여 보기 좋게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것에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두 부품을 연결할 때 부품 사이에 경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여 심미감을 높이는 것은 통상적인 디자인 방안).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한 채 단순히 적용상의 구체적 환경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4후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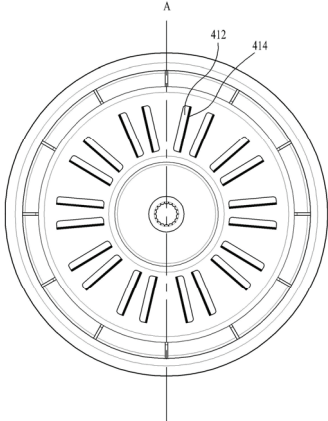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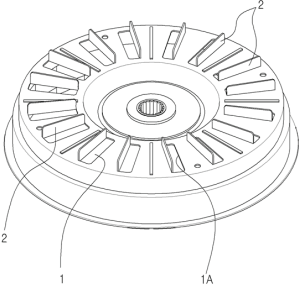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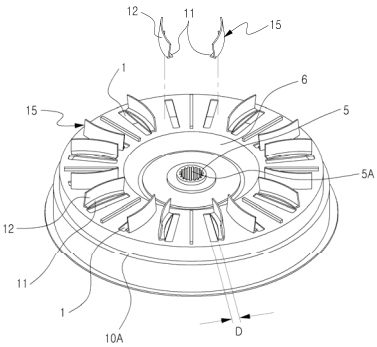
② 발명의 설명에 인용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인용 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예를 들면, 실험 결과)하는 더 나은 효과를 참작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하는 효과는 참작해서는 안 된다. [97후2224]

기술분야 건조기 (세탁장치)

쟁점사항

흡입군으로 구분된 방열공과 배출군으로 구분된 방열공이 서로 인접한 면적은 흡입군으로 구분된 방열공 끼리 또는 배출군으로 구분된 방열공끼리 인접한 면적보다 적은 기술에 관한 용이 도출 여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인용발명 |
|------|--|--|
| 대표면 |  | <p>인용발명 1</p>  <p>인용발명 2</p>  |
| 기술요지 | <p>〈주요 기술 구성〉 방열공은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군과 공기가 배출되는 배출군으로 구분되며, 상기 흡입군으로 구분된 방열공과 상기 배출군으로 구분된 방열공이 서로 인접한 면적은 상기 흡입군으로 구분된 방열공 끼리 또는 상기 배출군으로 구분된 방열공끼리 인접한 면적보다 적은 것</p> | <p>〈인용발명 1〉 블레이드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형성</p> <p>〈인용발명 2〉 블레이드는 마주보는 쌍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음</p> |

심결 · 판결의 요지

〈심사관 의견〉

인용발명 2의 단락 [0043]에 나타난 기재를 토대로 인용발명 2의 방열판 역시 대칭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터의 회전 방향에 상관없이 냉각핀이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의 충돌 및 교란 최소화’라는 효과 역시 인용발명 2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심결 요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2 모두 블레이드(냉각핀)를 대칭상으로 배치하여 흡입군과 배기군을 가지고 있어, 로터의 회전방향에 상관없이 공기의 유입과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출원발명은 블레이드 배열은 흡입군과 배기군이 분리되어 집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기 흡입 시 배기군에 속한 블레이드의 간섭이 없이 흡입군에 속한 블레이드를 통해 공기가 흡입될 수 있고, 공기의 배기 시에도 흡입 시와 마찬가지로 흡입군에 속한 블레이드의 간섭 없이 배기군에 속하는 블레이드를 통해 원활하게 배기될 수 있는데 비해, 인용발명 2에 나타난 블레이드 배열 구조는 흡입블레이드와 배기블레이드가 교대로 이웃하여 설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기 흡입과 배기 시에 흡입블레이드와 배기블레이드 사이에 간섭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인용발명 2에서는 출원발명에서 기대되는 것과 같은 원활한 공기 흐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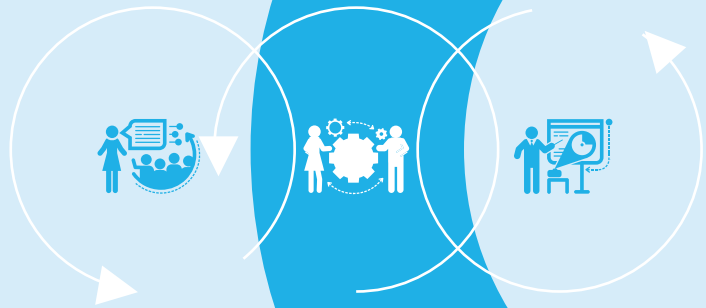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2006후2097, 2005후1264]

② 인용발명의 특정 사항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사항이 유사하거나,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일견(一見),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에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이 가진 것과는 이질의 효과를 갖거나 동질이라도 현저한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효과가 당해 기술수준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06후619, 2000후1184]

II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바.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



바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

바-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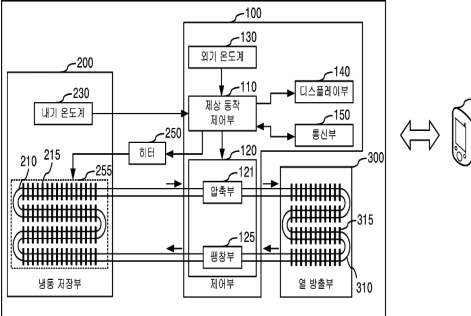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 (특허심판원 2018원3117)
발명의 설명의 용이 실시여부 판단을 위한 명세서의 기재정도

기술분야 냉장고 (제상동작을 수행하는 냉동기 및 그의 동작방법)

쟁점사항

청구항 제1항 및 제6항 발명과 관련한 발명의 설명 내용 중 ‘도달온도목표’ 및 ‘냉동 저장부 외부의 온도에 대응하는 기율기’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수식)이 불명확한지 여부

출원발명과 거절이유 개요

| 구 분 | 출원발명 | 〈 대표 도면 〉 | | | | | | |
|---------|---|--|---|--|---|---------|---|---|
| 기술요지 | <p>【청구항 1】 냉동 저장부의 냉각 파이프의 온도를 하강시키는 냉각부;상기 냉각 파이프에 이웃한 열선의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상기 냉각 파이프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히터;상기 냉동 저장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내기 온도계;상기 히터의 동작을 중단시키고 상기 냉각부를 동작 시킴으로써 상기 냉각 파이프의 온도를 하강시키는 냉동 동작 및 상기 히터를 동작 시키고 상기 냉각부의 동작을 중단시킴으로써 상기 냉각 파이프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제상 동작을 교번하여 수행하는 제상 동작 제어부;사용자 단말과 통신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냉동 저장부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외기 온도계를 포함하고,상기 제상 동작 제어부는 상기 냉동 동작을 사전 설정된 연속 냉동 시간 동안 연속하여 수행한 후 상기 냉동 저장부의 온도가 사전 설정된 냉동 온도 이하인 경우에 상기 제상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제상 동작을 사전 설정된 연속 제상 시간 동안 연속하여 수행한 후 상기 냉동 저장부의 온도가 사전 설정된 제상 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상기 냉동 동작을 수행하며,상기 제상 동작 제어부는 상기 냉동 동작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냉각 체크 시간 후에 상기 냉동 저장부의 온도가 도달 목표 온도를 초과한 경우 상기 냉각부의 상태가 이상 상태인 것으로 판정하고, 상기 제상 동작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가열 체크 시간 후에 상기 냉동 저장부의 온도가 상기 도달 목표 온도 이하인 경우 상기 히터의 상태가 이상 상태인 것으로 판정</p> | <p>〈 대표 도면 〉</p>  <p>〈 발명의 설명 중 관련 수식 〉</p> <table border="1" data-bbox="768 1270 1236 1505"> <tr> <td>수학적 식 1</td> <td>$T_d = T_p - \frac{(T_p - T_o)}{\alpha}$</td> <td>Td는 도달목표온도이고, Tp는 사전 설정된 기준 도달목표온도(예컨대 20℃)이고, To는 냉동저장부 외부의 온도이며, α는 1 이상의 실수이다.</td> </tr> <tr> <td>수학적 식 2</td> <td>$S_d = S_p - \frac{(T_p - T_o)}{\beta}$</td> <td>Sd는 상기 냉동저장부(200) 외부의 온도에 대응하는 기율기치이고, Sp는 사전 설정된 기준 기율기[예컨대 1분당 5도(5℃/minute)]이고, Tp는 사전 설정된 기준 도달목표온도이고, To는 냉동저장부 외부의 온도이며, β는 1 이상의 실수이다.</td> </tr> </table> <p>〈 거절결정 이유 〉</p> <p>발명의 설명에는 냉동 저장부의 도달목표온도(T_d)를 결정하는 상기 수학적 식 1과 관련하여, “α는 1 이상의 실수”(식별번호 [0037]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α 값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냉동 저장부의 외부 온도에 대응하는 기율기(S_d)’를 연산하는 상기 수학적 식 2와 관련하여, “β는 1 이상의 실수”</p> | 수학적 식 1 | $T_d = T_p - \frac{(T_p - T_o)}{\alpha}$ | Td는 도달목표온도이고, Tp는 사전 설정된 기준 도달목표온도(예컨대 20℃)이고, To는 냉동저장부 외부의 온도이며, α는 1 이상의 실수이다. | 수학적 식 2 | $S_d = S_p - \frac{(T_p - T_o)}{\beta}$ | Sd는 상기 냉동저장부(200) 외부의 온도에 대응하는 기율기치이고, Sp는 사전 설정된 기준 기율기[예컨대 1분당 5도(5℃/minute)]이고, Tp는 사전 설정된 기준 도달목표온도이고, To는 냉동저장부 외부의 온도이며, β는 1 이상의 실수이다. |
| | 수학적 식 1 | $T_d = T_p - \frac{(T_p - T_o)}{\alpha}$ | Td는 도달목표온도이고, Tp는 사전 설정된 기준 도달목표온도(예컨대 20℃)이고, To는 냉동저장부 외부의 온도이며, α는 1 이상의 실수이다. | | | | | |
| 수학적 식 2 | $S_d = S_p - \frac{(T_p - T_o)}{\beta}$ | Sd는 상기 냉동저장부(200) 외부의 온도에 대응하는 기율기치이고, Sp는 사전 설정된 기준 기율기[예컨대 1분당 5도(5℃/minute)]이고, Tp는 사전 설정된 기준 도달목표온도이고, To는 냉동저장부 외부의 온도이며, β는 1 이상의 실수이다. | | | | | | |

| | |
|--|--|
| <p>하며, 상기 냉각부의 상태가 이상 상태인 것으로 판정되면, 다음 번의 제상 동작을 생략하고, 상기 냉동 동작을 수행하는 중 상기 냉동 저장부의 온도가 상기 냉동 저장부 외부의 온도에 대응하는 기율기로 사전 설정된 이상 상태 판정 시간 동안 상승하는 경우, 상기 냉각부의 상태가 이상 상태인 것으로 판정하고, 상기 통신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과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냉각부의 상태 이상과 상기 히터의 상태 이상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상기 제상 동작 제어부는 상기 냉동 저장부 외부의 온도에 기초하여, 상기 도달 목표 온도를 조절하는 제상 동작을 수행하는 냉동기</p> | <p>(식별번호 [0045]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β 값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설명은 청구항 제1항 및 제6항의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p> |
|--|--|

심결 · 판결의 요지

[수학식 1,2]에서 α, β 의 값은 단순히 냉동기의 특성과 사용환경(외부온도)에 따라 가변적이고,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적절한 α, β 의 값을 정하는 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학식 1,2]에 관련 내용은 그 기술적 의미나 적용이 불명료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위의 수학식들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및 제6항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해지는 것도 아니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발명의 설명의 용이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004후3362, 2003후2072]

기술분야 건조기 (음압식 의류 건조기 제어방법)

쟁점사항

재심사 보정시 발명의 설명(식별번호 [0020]) 및 제13항과 제14항에 보정된 사항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정각하 결정의 요지

| 보정각하결정서 일부 발취 | 최초 기재된 발명의 설명 일부 발취 |
|--|---|
| <p>고풍량 제트모드는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가 텀블러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온도보다 낮을 때까지 수행하는” 기술내용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함)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또는 용이하게 유추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출원인은 2018.07.03.자 의견서에서 본원발명의 상기 기술적 특징은 최초 명세서 등의 단락 [0066]으로부터 보정된 것으로 주장하나, 최초 명세서 등의 단락 [0066]에는 “공기제트를 이용하여 건조하려면 외부 공기온도가 의류의 습구온도보다 높아야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고풍량 제트모드는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가 텀블러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온도보다 낮을 때까지 수행하는” 기술 내용으로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명세서 등의 다른 부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 <p>〈식별번호 [0077], [0085]〉</p> <p>고풍량 제트모드는 제1 및 제2 히터(41, 42)를 구동하지 않고 상온의 공기를 고풍량으로 공급하여 텀블러(10) 내의 젖은 의류를 건조시킨다.</p> <p>〈식별번호 [0007]〉</p> <p>“열전달이 일어나야 하므로 외부 공기온도가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보다 높아야 한다.</p> <p>〈식별번호 [0066]〉</p> <p>본 발명은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히트 펌프의 개념과 같이 공기제트를 이용하여 건조하려면 첫째는 외부 공기온도가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보다 높아야 하며...</p> |

심결 · 판결의 요지

최초 기재된 발명의 설명에는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젖은 의류를 건조할 조건은 외부 공기의 온도가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개시하고 있다.

상온의 외부공기만을 이용하여 의류를 건조시키는 고풍량 제트모드의 동작조건은 외부 공기의 온도가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보다 높은 경우, 다시 말하면,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가 외부 공기의 온도보다 낮은 경우인 것이므로, 발명의 설명(식별번호 [0020]) 및 이 사건 제13항 및 제14항 보정발명에 보정된 사항인 ‘고풍량 제트모드는 젖은 의류의 습구온도가 텀블러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온도보다 낮을 때까지 수행’하는 동작조건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식별번호 [0020]) 및 이 사건 제13항 및 제14항 보정발명에서 보정된 사항은 고풍량 제트모드의 동작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보정한 것이므로, 보정사항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보정이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사항이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인지 여부는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판단대상)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인용)의 범위 안에 있는가 여부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외형상의 완전 동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 보아 자명한 사항도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으로 간주한다. [2005후3130]

기술분야 **냉장고 (급수시스템을 구비한 냉장고)**

쟁점사항

출원발명의 재심사 보정요건의 충족 및 보정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기재불비(지시대상 불명확)로 인한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출원발명의 보정내용

| 구 분 | 보정 전 | 보정 후 |
|-----------------|--|--|
| 청구항 제1항 | 저장실을 구비한 본체와,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는 도어와 취수구로의 정화된 물을 공급하는 급수배관과 물을 정화하는 정수 필터와 상기 정수필터에 의해 정화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를 포함하는 급수시스템을 구비한 냉장고에 있어서, 상기 정수 필터는 상기 취수구와 인접하는 상기 도어에 마련되며 상기 도어 내측으로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물탱크는 상기 정수필터의 하측에 마련되고, 상기 정수 필터에서 공급되는 정수된 물을 상기 물탱크로 유입시키도록 상기 ① 물탱크의 상측에 마련되고 상기 정수필터와 연결되는 유입구를 포함하고, 상기 정수필터와 동일한 측으로 착탈 가능하게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 저장실을 구비한 본체와,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는 도어와 ② <u>상기 도어 외측에 마련되는</u> 취수구로의 정화된 물을 공급하는 급수배관과 물을 정화하고 상기 도어의 내측으로 착탈 가능하게 마련되는 정수필터와 상기 정수필터에 의해 정화된 물을 저장하고 상기 정수필터와 동일한 측으로 착탈 가능하게 마련되는 물탱크를 포함하는 급수시스템을 구비한 냉장고에 있어서, ③ <u>상기 정수필터와 상기 물탱크 및 상기 취수구는 상기 도어의 상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측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정수필터를 통해 정화된 물이 상기 도어의 상측에서부터 일 방향으로 유동되어 상기 취수구를 통해 상기 냉장고 외측으로 토출되는 것을</u>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
| 청구항 제7항 | 제6항에 있어서, <u>상기 유입구에는</u> 상기 정수필터와의 용이한 착탈을 위해 소켓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 |
| 보정 사항 요지 | 주요 보정사항은 보정 전의 ① ‘물탱크의 유입구’를 삭제하고(이하 ‘보정사항 1’이라 한다), ② ‘취수구’를 도어 외측에 마련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③ ‘정수필터, 물탱크 및 취수구의 배치관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 |

심결 · 판결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호의 보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보정은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그 구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반되며, 이는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정을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하한 결정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보정의 보정사항 1은 구성(물탱크의 유입구)을 삭제하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7조제3항의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에는 “상기 유입구에는 … 냉장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에서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는 ‘유입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는 ‘유입구’와 상응하는 구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의 구성은 명확하고, 나아가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판단해 보면, 제7항 보정발명의 ‘상기 유입구’가 ‘급수배관의 유입구’인지 ‘물탱크의 유입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은 그 구성이 명확하지 않고(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 이는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③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호의 보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그 구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반되며, 이는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

시사점 · 판단 가이드

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최후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①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및 ③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47조제3항].

②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51조제1항]

편집위원

편집 위원장

특허심사기획국 국 장 김 지 수

편집 위원

가전제품심사과 과 장 송 대 종
기술서기관 이 강 하
기술서기관 남 배 인
공업사무관 장 호 근
전산사무관 금 종 민
공업사무관 송 정 섭
공 업 주 사 신 희 상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발행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가전제품심사과
가전제품특허연구회

전 화 (042) 481-8187

팩 스 (042) 472-3471

발행일 2021년 8월

ISBN : 979-11-91116-64-9 13500

| 이용허락 유형 | 표시 마크 | 이용허락범위 |
|---------------------------------|---|--|
|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ISBN : 979-11-91116-64-9 13500
DOI : 10.8080/P9791191116649